

의안번호	제 2020 - 31호
보 고 연 월 일	2020. 12. 7. (제106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37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	2
1. 범죄군 명칭	2
2.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2
3. 권고 형량범위	4
4. 양형인자	8
5. 집행유예 참작사유	42
6. 기타	47
III.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49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심의 내용	49
2. 권고 형량범위 설정의 고려사항	51
3. 권고 형량범위 검토	51
IV.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범 포함 여부, 대유형 배치 순서 및 소유형 명칭 변경	60
1. 과실범 포함 여부	60
2. 대유형 배치·소유형 명칭 변경	63
V.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69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심의 내용	69
2. 권고 형량범위 설정의 고려사항	80
3. 참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80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84

5. 결론	99
VI. 과실치사상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102
1. 개관	102
2. 구성요건과 양형자료조사 결과	112
3.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결과	121
4.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126
VII. 향후 일정	130

【별첨】

- 백광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최성국, 유관모, “디지털 성범죄 공청회의견조회 결과 검토”
- 최승원,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권고 형량 범위)”
- 최성국, 유관모, “주거침입, 환경범죄 양형기준 검토(II) -형량 범위-”
- 최승원, “환경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권고 형량 범위)”
- 최승원, “환경범죄 양형기준 추가 검토(소유형의 명칭 및 대유형 배치 순서 관련)”
- 백광균,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최성국, 유관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 검토(I)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I. 제137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20. 11. 16.(월) 15:00 ~ 22:0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전문위원 11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경, 김희연, 박성훈, 백광균, 유관모, 이형일, 최성국, 최승원, 최준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범현, 한상규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안 권고 형량범위
-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안 권고 형량범위
- 「과실치사상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II.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1. 범죄군 명칭

가. 의견 요지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채택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범죄가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통상 「사이버」는 가상 세계의 특성을, 「디지털」은 범죄 행위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혹은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지거나 재현된 특성을, 「온라인」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특성을 표현하는데,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성범죄」 혹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양형위원회는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이미 국가기관이나 언론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명칭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일반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도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군 명칭을 결정했고, 그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았음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는 양형기준안 표지와 「유형의 정의」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범죄가 이에 포함되는지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2.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가. 의견 요지

- ①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각 소유형 안에서도 해당 매체·행위 태양이 다양한 이상 이를 세분할 필요가 있음 (공청회 이윤정 교수 토론)
- ②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중 강요 범죄와 법정형이 같고 구성요건 유사한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 인질강도(형법 제336조)의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함 (공청회 이경렬 교수 토론)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1)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각 소유형 안에서도 다시 매체·행위 태양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할지 여부

- 유형 분류는 ①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하고, ②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③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종전 양형 사례가 적고, 상당 수 유형에서 최근 법정형 상향이 이루어져 유형을 보다 세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새로운 양상의 범죄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현행 유형 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 인질강도(형법 제336조)의 양형기준을 마련할지 여부

-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 인질강도(형법 제336조) 범죄는 이미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2020 양형기준 책자 114쪽)

3. 권고 형량범위

가. 의견 요지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관한 의견]

- ① ㉠ 무기 징역이 가능한 「제작 등」 범죄는 가중범위를 무기징역까지, 나머지는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까지를 범위로 해야 하고, ㉡ 성착취 알선은 죄질이 제작과 별 차이 없으나 법에서는 형량을 구분하고 있기에 감경이나 기본 범위가 낮을 수 있어도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므로 가중 범위를 유기징역 30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 청소년성보호법은 영리 목적, 제작, 판매, 광고, 소지 등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규정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고려하여 형량을 똑같이 정한 미국의 경우를 참조하면, 서로 다른 형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 ② 기존 범조계가 잘못된 양형기준을 적용했던 것이므로, 기존 통계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백지상태에서 미국의 엄벌 사례를 참조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십대 여성 인권 센터**)
- ③ 일반양형인자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는 형량의 폭이 매우 커, 다수범 영역에 속해 엄벌할 수 있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감경을 위해 얼마든지 그 췌값을 희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음 (**리셋**)
- ④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영역에서 형량 범위의 폭이 기이하게 커서 일반양형인자를 통하여 형량이 대폭 낮아질 여지가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 무분별한 감형을 통해 많은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처참한 수준이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배포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중 반포 등,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은 권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진정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안의 처벌 강화와 시정을 강력히 요구함 (**DEBUNK**)

[대유형 1의 권고 형량범위 상황]

- 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중 제1유형(제작·수출입, 감경 2년 6월-6년 / 기본 5-9년 / 가중 7-13년)은 법정형(무기, 5년↑)이 동일한 아동·청소년 강간에 대한 형량 범위(감경 6-9년 / 기본 8-12년 / 가중 11-15년)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 나머지 유형 또한 이에 맞추어 일정 부분 형량 범위 높일 필요가 있음 (**법무부**)
- ⑥ 대유형 1 중 소유형 1(제작 등), 소유형 2(영리 등 목적 판매 등)의 하한은 2년 6월이나,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처럼 3년으로 올려 양형기준 이탈에 대한 부담을 지워야 하고, 소유형 5(구입 등)의 하한은 6월이나, 13세 이상 장애인 위력 추행처럼 9월로 올려야 함 (**공청회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토론**)
- ⑦ 디지털 성범죄에서 영리 목적은 범죄단체에 준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하므로 대유형

1 중 소유형 2(영리 등 목적 판매 등)의 상한은 더 높여야 함 (공청회 이윤정 교수 토론)

[대유형 2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

⑧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삼은 배포 범죄로서, 대유형 2의 소유형 2(반포 등)도 형량 범위를 올려야 함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행정예고에 접수된 개인 의견)

[대유형 3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

⑨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등(제1유형), 반포 등(제2유형)이 법정형은 같으나, 그 행위 태양 측면에서 죄질을 달리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마찬가지로 권고형의 범위를 달리 설정하여야 마땅함 (공청회 신진희 변호사 토론)

[대유형 4의 권고 형량범위 수정]

⑩ 협박(제1유형, 1년↑)의 권고 형량이 감경 9월-1년 6월 / 기본 1-3년 / 가중 2-4년으로 법정형 상한 30년과 사이에서 4-30년이라는 폭넓은 구간이 권고 형량 범위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있음 (공청회 이경렬 교수 토론)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1)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걸쳐 형량범위를 상향할지 여부(의견 요지 ①~④ 관련)

- 양형위원회는 종전 양형 현황은 물론이고, 동일·유사한 법정형의 범죄에 대한 종전 양형기준,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과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였고, 그 후 법정형의 추가 변동 등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았음
- 미국은 우리와 법률과 양형기준 체계가 모두 달라서 그대로 참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예를 들어 미국 연방 법전 제18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 하한은 15년으로(제2251조 e항),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훨씬 높음

(2)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제1유형(제작·수출입)의 권고 형량범위를 아동·청소년 강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와 같게 높이고, 나머지 유형도 이에 맞추어 일정 부분 형량범위를 높일지 여부(의견 요지 ⑤ 관련)

- 의견 요지 ⑤에서 근거로 든 아동·청소년 강간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는 아동·청소년 중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죄에 권고되는 형량범위이므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권고 형량범위라고 볼 수 없음
- 현행 권고 형량범위는 아동·청소년 중 13세 이상에 대한 강간의 권고 형량범위(감경 3년-5년 6월 / 기본 5-8년 / 가중 6-9년)보다 전체적으로 상향하여 정하여짐
- 더욱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상쇄시키는 특별감경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중 영역에 해당하게 되므로, 13세 미만 강간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와 사이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3)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소유형 1(제작 등), 소유형 2(영리 등 목적 판매 등), 소유형 5(구입 등)의 권고 형량범위 상·하한을 모두 상향할지 여부(의견 요지 ⑥, ⑦ 관련)

- 대유형 1 중 소유형 1, 2, 5는 모두 일반적인 성범죄와 비교하여 행위 태양이 다양함. 따라서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의 폭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유형 2, 5는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참고할 만한 중

전 양형실무가 존재하지 않고, 신설된 구성요건 또한 다수 포함됨. 따라서 향후 양형실무 추이를 분석한 후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형량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4)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삼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배포 범죄인 대유형 2 중 소유형 2(반포 등)의 형량 범위를 올려야 할지 여부(의견 요지 ⑧ 관련)

- 통상의 성범죄와 비교하여 행위 태양이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형량 범위의 폭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법정형이 상향된 직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참고할 만한 양형실무가 존재하지 않고, 구성요건에도 일부 변동이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추가 상향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5) 대유형 3의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등(제1유형), 반포 등(제2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달리 설정할지 여부(의견 요지 ⑨ 관련)

-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등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촬영물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동일한 편집 등(소유형 1)과 반포 등(소유형 2) 사이에서 권고 형량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필요성이 높지 않음
- 최근 신설된 범죄로서 양형자료조사 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 대유형 4 중 소유형 1의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9개월-4년이

므로, 법정형 상한 30년과 사이에 존재하는 4년-30년까지 확보되도록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지 여부(의견 요지 ⑩ 관련)

- 양형기준의 기능은 어떤 특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과 일치하는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70-80%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데 있음
- 양형기준이 전제한 전형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일 경우 법관이 양형기준의 이탈을 통하여 적정한 선고가 이루어짐

4. 양형인자

가. 일반적인 사항

(1) 의견 요지

- ① 아동·청소년과 같은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 생산, 소비하는 것은 실수나 호기심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명백한 잘못임을 무시한 행동이므로 감경 사유를 허용하여서는 안 됨 (부산대학교 여성주의 대모임 해체)
- ② 현행 양형기준 중 성범죄 이외에는 대체로 가중 / 감경요소의 개수가 균형을 이루는데,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가중요소의 개수가 많고, 인정될 여지 또한 커서 사실상 감경 /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대한변호사협회)
- ③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특별가중인자는 서로 겹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첩될 인자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한변호사협회)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 감경 사유를 아예 허용하지 않을지 여부(의견 요지 ① 관련)

- 양형기준은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의 3개 영역을 두되, 감경 및 가중 인자를 두어 영역 사이의 이동과 형량

범위 변동을 인정하고 있음

- 감경 사유를 없애는 것은 이러한 양형기준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많으므로 그 균형을 도모할지 여부(의견 요지 ② 관련)

- 디지털 성범죄는 종전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 중 성범죄와 가장 비슷하고, 성범죄 역시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많음
- 양형인자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출되므로,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양형인자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디지털 성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적용할 필요가 있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양형요소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었으므로, 향후 죄책에 비례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가중인자가 중첩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할지 여부(의견 요지 ③ 관련)

- 특별가중인자 중 별도의 정의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가중인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따로 둠

- 해당 정의 규정은 범행의 수법, 동기, 피해자라는 서로 다른 관점의 양형요소를 반영한 것으로서, 동일한 양형요소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나. 양형기준안에서 제시한 양형인자

(1) 가중 인자

(가) 의견 요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관련]

- 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제시된 여러 행위 태양이 병존하는 이상, 조직적 범행, 전문적 범행, 가해자 다수 등을 각각 독립한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② ㉠ 가해자 규모(가해자 수, 조직적 범죄, 범죄수익 규모 등) / 성착취를 촉진하는 기술을 이용했거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범죄 은폐 혹은 확산을 위한 기술을 사용 / 성착취물 피해 아동의 개인 정보를 함께 공개함 / 그루밍에 의한 범죄(보호자 동의 없이 사적인 메신저로 연결하거나 만남을 제안하거나 선물 등 대가 제공, 연예인과 만남, 연예인이나 모델로 캐스팅, 아이돌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제안 등 - 보호자 동의 없이 접근을 시도하여 범죄를 실행) /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러 차례 설득하거나 회유 등을 시도를 예시에 추가하고, ㉡ 성착취물을 구하기 위해 검색, 쪽지 보내기 등 여러 차례 접근 시도 등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여러 차례 동의를 구한 정황이 있다면,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가중요소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탄내일)
- ③ 디지털 성범죄는 극악한 형태와 경미한 형태를 임의로 구분할 수 없고,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이 특별가중인자의 예시를 모두 충족하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위하력의 행사도 기대할 수 없으며, 기본 형량의 하한선을 상향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여성의 당)
- ④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의 고유한 특성 그 자체이므로 특별가중인자로 거듭 인정하면 이중평가 문제가 생김 (공청회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토론)
- 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제작행위 관련한 것과 배포행위 관련한 것으로 구별, 구체화할 수 있음 (공청회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토론)
- ⑥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유포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함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관련]

- ⑦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는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소유형 5(구입 등) 중 구입, 시청에서 당연히 해당하고, 소유형 1(제작 등), 소유형 2(영리 등 목적 판매 등)에서는 해당하기 어려워 재검토하여야 함 (공청회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토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관련]

- ⑧ 피해자의 연령 관련 사항(영아, 유아, 초등학생 등 피해자의 연령이 지나치게 어림) /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큼 / 장애 아동·청소년 등의 사정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예시 규정에 추가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관련]

- ⑨ 「유포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성착취물과 함께 유포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⑩ 현재 정의는 구체적 예시가 매우 좁고 피해자에게 현격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살, 자살시도, 가정 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 가정생활, 학업, 생계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로 수정하여야 함 (한국성폭력상담소)

- ⑪ ㉮ 피해자마다 피해 정도, 양상, 양태, 느낌이 다양한 이상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은 삭제하고, ⑭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업, 이직 및 노동권의 침해 등 피해자의 일상을 중단하게 만드는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여야 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⑫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라는 조건은 형법 실무에서 모호하게 작용할 위험이 크므로 구체적인 기준이 열거될 필요가 있음 (여성의 당)

- ⑬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형벌의 전제가 되거나 가중사유가 되는 것은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의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피해자다움」을 인정할 수 있기에 비중 있는 가중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공청회 이윤정 교수 토론)

- ⑭ 「자살, 자살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증명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관련]

- ⑮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금전」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상에서 상용되는 다양한 이익, 예컨대

성착취물을 새롭게 공유받을 수 있는 포인트 등의 대가까지 포함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관련]

⑯ 연인관계 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예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⑰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음을 추가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⑱ 신고의무자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실무에서는 신뢰 관계에 있는 범행의 비중도 크므로 일반가중 인자가 아니라 특별가중인자로 가야 적당함 (십대 여성 인권 센터)

⑲ 배우자, 연인관계를 예시로 추가하여야 함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관련]

㉑ 동종 벌금형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나) 논의 결과 ⇨ 일부 의견 불일치(불일치 부분은 별도 표시)

㉒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기재된 예시를 각기 별도로 특별가중사유로 정하거나 아예 이러한 특별가중사유를 인정하지 말고 기본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지 여부(의견 요지 ①, ③ 관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는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유사한 정의 규정을 두면서 여러 예시에 한꺼번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방안은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권고 형량범위의 규범적 조정의 정도가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 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기재된 예시에 가해 규모 관련 사정을 추가하거나,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여러 차례 동의를 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특별가중사유로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② 관련)
 - 현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 정하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으로도 주장된 각 사유들이 모두 포섭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할 필요 없음

- 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포함된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를 제외하거나 수정할지 여부(의견 요지 ④ 관련)
 - 동일한 유포 범행이어도 전파성이 비교적 낮은 1대1 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경우와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죄질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양형인자 정의 중 “인터넷 등”이라는 부분은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
 - 범행 과정에서 “인터넷”이 사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전파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법관이 개별 사안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전파성이 높은 수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삭제함이 바람직함

- ㉖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제작행위 관련된 것과 배포행위 관련된 것으로 구별하여 구체화할지 여부(의견

요지 ⑤ 관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주요 수법은 이미 예시되어 있고, 종전 양형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더 세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에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유포한 경우」를 포함할지 여부(의견 요지 ⑥ 관련)

- 다른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예시인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재 양형인자로도 가중 처벌 가능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예시에 「범행 자체를 즐거서 저지른 경우」를 제외할지 여부(의견 요지 ⑦ 관련)

- 성착취물을 구입, 시청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범행 자체를 즐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작, 판매 등 행위에서도 왜곡된 성관념을 기초로 범행 자체를 즐긴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예시에 피해자 연령 관련 사항,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큼 등의 사정을 추가할지 여부(의견 요지 ⑧ 관련)

- 현재 양형기준안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정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포섭할 수 있음

-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예시에 「유포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성착취물과 함께 유포된 경우」도 포함할지 여부 (의견 요지 ⑨ 관련)
 - 「유포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삼으면, 판매 등 유포 범죄에서는 항상 특별가중인자를 인정하는 썸이 되므로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문제가 생김
 -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성착취물과 함께 유포된 경우」는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재 양형기준안으로도 가중 처벌이 가능함

-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 기재 예시 중 「자살, 자살시도, 가정 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수정할지 여부(의견 요지 ⑩, ⑪, ⑭ 관련) ⇨ 의견 불일치
 - 「자살, 자살시도」는 정의 규정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말미암아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함이 타당
 - 대유형 2에서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로 가정 파탄, 학업 중단 외에 실직도 언급되어 있음. 현재 양형기준안의 대유형 1에서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실직이 예시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라도 직장이 있다면 실직은 큰 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포함함이 바람직
 - 다만, ‘자살, 자살시도, 가정 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하여 기재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뉘었음

㉠ 다수 의견(8인)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변경

- 가정 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과 같이 구체화할 경우 자살, 자살 시도를 기재하였을 때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종전의 정의 규정과 비교하여 다소 추상화된 예시를 제시함이 바람직함

㉡ 소수 의견(3인) : '가정 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변경

- 가정 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은 자살, 자살 시도를 기재하였을 경우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별가중인자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함이 타당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 기재 예시 중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이라는 부분,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를 수정할지 여부(의견 요지 ⑩, ⑪ 관련) ⇨ **의견 불일치**

-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이라는 부분의 경우 성착취물 중 특별가중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법관

의 객관적인 판단 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음 ☞ 관계 기관 의견 조희나 공청회에서도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음

-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와 관련되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를 수정할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뉘었음

㉠ 제1 의견(4인) : 현행 양형기준안 유지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반에 관한 우리나라 형법 교과서, 학술 자료, 판례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함이 타당

㉡ 제2 의견(4인) :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로 변경

-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칫 피해자다움을 요구 당하는 것과 같은 인식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라는 표현만으로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주지 않음
- 피해자마다 피해 정도와 양상, 느낌이 다르므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미리 한정하지 말고 양형심리를 통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 제3 의견(3인)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로 변경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제1 의견과 같이 그대로 사용함이 타당함. 그러나 ‘혐오감’이라는 용어는 마치 피해자가 찍힌 영상이 혐오감을 야기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함
 - 다만,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전달한 다른 사람의 말, 음향 등이 혐오감을 준다는 취지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으므로 현행 양형기준안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둬야 타당함
-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의 예시 중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를 구체적인 예시를 두는 방향으로 수정할지 여부(의견 요지 ⑫ 관련)
- 인적 동일성은 얼굴, 이목구비 등 신체 특징은 물론 성착취물 자체의 표제, 작성자 등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 예시를 두면 오히려 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 있음
-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지 여부(의견 요지 ⑬ 관련)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성범죄 등 다른 범죄에서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됨
 -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인 양형심리와 양형이유의 실시 과정에서 유념할 사항임. 피해자에게 심각

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와 양형상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음

㉞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금전」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이익까지 포함하는 표현으로 바꿀지 여부(의견 요지 ⑮ 관련)

○ 「이익」이라는 표현은 금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재산적 이익을 포함하므로 반영 필요성이 낮음

㉟ ‘인적 신뢰 관계 이용’의 정의 규정에서의 예시를 추가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의견 요지 ⑯, ⑰, ⑱ 관련) ⇨ 의견 불일치

○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사제(師弟)’라는 표현은 지위의 상하 관계를 더 잘 표현하는 ‘제자’로 변경함이 바람직함

○ 추가 예시로 제안된 ‘배우자’는 아동·청소년과 잘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추가하지 않음이 타당

○ 추가 예시로 제안된 ‘연인’을 포함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뉘었음

㉠ 다수 의견(7인): 현행 양형기준안 유지

○ ‘인적 신뢰 관계 이용’에 제시된 제자, 지인의 자녀의 경우 지위의 상하 관계를 감안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는데, 연인의 경우 언제나 이와 동일한 평가가 가능하지는 않음

○ 연인 관계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포섭할 수 있음

㉞ 소수 의견(4인) : 정의 규정에 ‘연인’을 추가

- ‘연인’은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관계이고, 실제로 빈발하고 있음

㉟ ‘인적 신뢰 관계 이용’을 일반가중인자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변경할지 여부(의견 요지 ⑩ 관련)

-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모두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였고, 이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에서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아니라 ‘동종 벌금형 이상’으로 넓힐지 여부(의견 요지 ⑳ 관련)

- 다른 양형기준에서도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기준으로 가장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 벌금형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음

(2) 감경 인자

(가) 의견 요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 ① 디지털 성범죄는 단 한번이라도 판매, 유통되었다면, 성착취물의 삭제가 영구히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 피해를 막기가 어려운 이상 특별감경인자가 아니라 일반감경인자로 두어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② 신중 수법을 갱신하면서 모방, 응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임의적, 자의적 판단을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한국성폭력상담소)
- ③ 일반감경인자로 조정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 ④ 「단순 공모」는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적 특징이므로 특별히 형을 감경해줄 필요가 없음 (십대 여성 인권 센터)

[‘농아자’ 관련]

- ⑤ 과거와 달리 특수교육의 발달 등으로 농아자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에 미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일률적으로 농아자를 감경사유로 두는 것은 오히려 농아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보이므로, 일률적인 감경요소로 두기보다는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다른 감경요소인 심신미약에 포함,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⑥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대화 가능하므로 지적장애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특별양형인자로 볼 수 없음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 ⑦ 상당수 청각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이상, 필수적 형 감경을 정한 형법 제11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청각장애인을 낮추어 부르는 「농아자」 대신 「청각장애인」이라는 적합한 법률용어로 대체하여야 함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관련]

- ⑧ ㉑ 성범죄의 경우 준강간에서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㉒ 사회적으로 「성폭력 범죄자는 정신질환자」라는 프레임이 적극적으로 작동되는 현실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곧 예비범죄자라는 혐오를 재생산하게 되고, 성폭력 범죄를 사회 구조에 기반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문제적 개인에 귀인하는 범죄라는 통념이 작동하므로, 정신질환자의 성폭력 범죄 이후에 대한 사회적 조치, 예컨대 치료감호소 등의 구급시설에서의 적극적 치료 조치 및 보완적 대안 등이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할 것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⑨ 일반감정인자로 조정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 ⑩ 고의로 만취 상태가 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데, 사실상 고의와 마찬가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십대 여성 인권 센터)

[‘자수’ 관련]

- ⑪ 일반감정인자로 조정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관련]

- ⑫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처벌불원」처럼 행위자/기타인자이면서도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춘천지방법원)

⑬ ㉑ 이미 유포된 성착취물은 현재 기술로는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추가 피해 가능성이 남아 있어 「유포 전 즉시 삭제 혹은 폐기」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㉒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즉 「유포 전 삭제」, 「유포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자백, 모니터링, 삭제지원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볼 것이며, ㉓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모두 일반감경인자로 삼는 것이 타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⑭ 「유포된 성착취물 등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는 삭제 전문 업체의 성행과 성폭력 가해자 전문 법률기업(law firm)의 활약으로 이어지거나, 삭제된 것으로 비치는 일부 보고서만 제출할 가능성이 크기에 해당 내용을 피해자나 제3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구체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므로 삭제하여야 함 (한국성폭력상담소)

⑮ ㉑ 이미 촬영, 소지, 유포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상, 유포하기 전에 삭제 또는 폐기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놓은 것은 이미 개정된 법과 균형에 어긋나고, 촬영, 소지만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하며, ㉒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도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는 반면,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면 감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또 다른 시장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 이 인자는 삭제하여야 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⑯ 유포 전 완전 삭제만 반영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⑰ 해당되는 예시들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한 번 유포가 이뤄지면 피해는 무제한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성착취물의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이를 형식적인 차원에서 악용할 소지가 우려되기에 위하력의 행사를 기대하기에도 부적절 (여성의 당)

⑱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로 삼아야 함 (공청회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토론)

⑲ 유포 전 삭제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고, 유포 후 삭제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산업의 활성화, 즉 디지털 성범죄로 돈을 버는 산업구조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소극 가담’ 관련]

⑳ 종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처럼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정의를 수정하고, 영상물 플랫폼 운영자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는 소극 가담을 적용하지 말아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㉑ 위력이나 위계, 강요에 의한 가담으로 제한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 ㉒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가담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삭제하여야 함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처벌불원’ 관련]

- ㉓ ㉑ 처벌불원은 그 당시 장래 피해 발생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에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서 「일반감경인자」로 삼아야 하고, ㉒ 피해자 다수 중 일부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처벌 의사를 표시하거나 나중에 특정된 경우,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있어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㉔ 그루밍을 통한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게 의존적인 경우도 많고 가해를 연인으로 생각하거나, 가해자를 동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인 가해자들은 이러한 아동의 심리를 이용하여 조종하고 통제하므로, 처벌불원이 감경사유로 포함된다면 가해자들은 아동의 심리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워지므로, 피해자가 원할 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아야 진정한 의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음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 ㉕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두는 것이 적당함 (십대 여성 인권 센터)

[‘진지한 반성’ 관련]

- ㉖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이 확인할 수 있는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삼아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㉗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에 포함된다면 「반성 없음」 또한 특별가중인자로 포함되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㉘ 반성문 등으로 「진지한 반성」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에서 그 진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바,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반성」을 바탕으로 감형을 하는 셈이 되므로 삭제하여야 함 (한국성폭력상담소)
- ㉙ 피고인의 반성문, 주변인을 통한 탄원서는 재판부가 아닌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못을 저지르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질서이므로, 반성을 감경인자로 두기보다는 반성 없음을 가중인자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㉚ 피고인의 주관적/감정적 의사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감형을 이유로 법정에서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품거나 이후 보복을 하는 경우도

많기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였는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제2차 피해는 없었는지 등 수사, 재판의 전체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오히려 반성을 안 했을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㉓ 반성을 이벤트처럼 표현하고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어 재발 방지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진심에 의한 진짜 사과인지 가려내어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㉔ 반성문 분량을 불문하고, 법원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어야 함 (공청회 이윤정 교수 토론)

㉕ 증명, 측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반성문 대필시키는 등 여러 문제 있어 삭제하여야 함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관련]

㉖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입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처벌받지 않음을 기회로 삼아 더 많은 범죄를 저지러 수 있었던 이상, 일반감경인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㉗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 횟수와 무관하게 한 번의 범죄만으로도 온라인으로 피해가 대량으로 파급되는 데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 범죄의 초범 개념을 디지털 성범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빠른 확산력이라는 디지털 공간의 특성과 맞지 않아 감경요소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㉘ 신고되어 수사받은 것이 처음이라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촬영물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 관련]

㉙ 종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대체 인자로서 「촬영물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을 두었는데, 위 각 범죄와 본질에서 동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는 없는 인자이므로 부당하므로 삭제되어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㉚ 이 양형인자를 두면 피해자가 얼마만큼 협박과 강요가 있었는지 또다시 증명해야 할 수 있으며, 「경미」하다는 것은 피해 당시 범죄 발생 전후 맥락, 피해자의 성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권력 등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㉛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정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음란성)」에서 「음란성」

은 판사의 주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㉔ ‘촬영물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란 주로 성기 삽입 영상이 어둡게 찍힌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를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치환할 수는 없기에 삭제하여야 함 (여성의 당)
- ㉕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성적 수치심, 음란성을 경중의 문제로 평가하게 되면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이 불분명해질 우려가 크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 (십대 여성 인권 센터)
- ㉖ 종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대체 인자로 도입하였으나,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㉑ 촬영 기기의 문제, ㉒ 촬영 각도의 문제, ㉓ 촬영 당시 흔들림, ㉔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조도, ㉕ 촬영물의 반복적 복제로 인한 화질 저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범행 자체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감경인자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매우 선명한 화질로 적나라하게 촬영, 유포되어 피해가 심각할 때 가중하는 것이 바람직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 ㉗ 「촬영물, 편집물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기준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것을 특별감경사유나 집행유예의 주요공정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정의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서는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인 반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회수한 경우로 달리 정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상당 금액 공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요소라는 점에서 감경인자 등에서 제외된 점에 비추어 보면, 재검토할 여지도 있음 (공청회 신진희 변호사 토론)
- ㉘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종전에도 당 범죄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곤 했는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굳이 특별감경인자로 두면, 그릇된 범죄의식을 악화하는 꼴이 되므로 삭제하여야 함 (공청회 김현아 변호사 토론)

(나) 논의 결과 ⇨ ‘소극 가담’의 정의 규정과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정의 규정 일부 수정, 나머지 감경인자는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㉑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변경하거나 삭제할지 여부(의견 요지 ①, ②, ③ 관련)
- 상당수 다른 범죄에서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취급하고 있고, 임의적, 자의

적 판단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 없음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상 차등을 둬으로써 죄책의 정도에 맞는 양형이 이루어지게 될 뿐 아니라 범행과 피해 확산을 막는 역할도 기대됨

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 규정에 포함된 예시 중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를 삭제할지 여부(의견 요지 ④ 관련)

- 실행행위에 일부라도 관여한 경우는 ‘단순 공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삭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㉕ 특별감경인자인 ‘농아자’를 삭제하거나 심신미약에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수정할지 여부(의견 요지 ⑤, ⑥ 관련)

- 형법 제11조에서 농아자의 행위는 일률적으로 필수적 형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형기준에서 ‘농아자’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거나 형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형태로 반영할 수 없음

- 농아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처우는 앞으로 사회 전체의 충분한 논의와 형법 개정을 통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함

㉖ 특별감경인자인 ‘농아자’를 ‘청각장애인’으로 변경하고, 필수적 형 감경사유로 정한 형법 제11조를 개정하여야 할지 여부(의견 요지 ⑦ 관련)

- 「농아자」를 「청각 및 발음(발성) 장애인」으로 표시하는 방안

을 상정할 수 있으나, 형법 제11조에 규정된 법률용어를 양형기준에서 다르게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형법 제11조의 개정은 양형위원회의 권한 밖의 문제임

- ㉞ 특별감경인자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삭제하거나 일반감경인자로 변경할지 여부(의견 요지 ⑧, ⑨ 관련)
 - 심신미약자에 대한 치료조치 등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양형에서의 취급과는 별개의 문제임
 -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서술식 기준을 둔 점, 다른 양형기준과의 균형 측면에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㉞ 서술식 기준에 포함된 사항 중 고의로 만취가 된 ‘심신미약’을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변경할지 여부(의견 요지 ⑩ 관련)
 - 성범죄 등에서 동일한 서술식 기준을 두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에서만 이와 다른 서술식 기준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㉞ 특별감경인자인 ‘자수’를 일반감경인자로 변경할지 여부(의견 요지 ⑪ 관련)
 -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형법 제52조 제1항)로서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됨

-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처벌불원」처럼 행위자/기타인자이면서도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할지 여부(의견 요지 ⑫ 관련)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행위자/기타 인자로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고, 「처벌불원」과 마찬가지로 행위인자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예외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삭제하거나, 일반 감경인자로 변경하거나, 그 정의 규정 중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삭제할지 여부(의견 요지 ⑬~⑰ 관련)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무한 복제 가능성이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미 생긴 피해의 「확산」을 형사정책 차원에서 최소화하려는 취지로서 ① 유포 전에는 즉시 삭제, 폐기, ② 유포 후에는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인 자발적으로 회수를 요건으로 삼았음
- 이러한 형사정책 차원의 배려는 성착취물의 유포 여부, 전후를 불문하고 요구되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최소화라는 취지를 관철하려면, 「일반감경인자」가 아닌 「특별감경인자」로 보아 피해확산방지를 촉진하여야 함
- 예시에 추가하자고 제안된 사항 중 「자백」을 감경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니터링」은 장래 이행 여부를 선불리 판단할 수 없기에 확실성이 요구되는 양형인자로서 부적절함.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는 요소라는 이유로 양형위원회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정하였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생기지 않았음

㉞ 「소극 가담」의 정의를 성범죄와 동일하게 맞출지 여부(의견 요지 ㉞ 관련)

- 디지털 성범죄는 성범죄의 일종이므로 ‘소극 가담’의 정의 역시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의와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 변경되는 소극 가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㉟ 「소극 가담」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거나 그 정의를 변경할지 여부(의견 요지 ㉞, ㉟, ㊱ 관련)

- 성범죄를 비롯한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고,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운영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영리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상 애당초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현재의 정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양형인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㊲ 「처벌불원」을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변경하거나 감경인자에서 삭제할지 여부(의견 요지 ㉞, ㊲, ㊳ 관련)

-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아닌 나머지 대유형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임. 따라서 다른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처벌에 관한 피해자 의사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형위원회에서는 '처벌불원'의 반영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재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㉞ 「처벌불원」에 관하여 피해자 다수 중 일부만이 그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명시할지 여부(의견 요지 ㉞ 관련)
-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개 범죄별로 '처벌불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문제되지 않음
 -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 중 일부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관은 피해자별 실제 피해 및 회복 정도 등 다양한 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처벌불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사안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을 미리 양형기준에서 정의해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합리적인 양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양형기준에서도 따로 기준을 두지 않았음
- ㉟ 「진지한 반성」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거나, 오히려 「반성 없음」을 가중인자로 삼을지 여부(의견 요지 ㉞~㉟ 관련)
- '진지한 반성'은 모든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고, 특별감경인자와 달리 권고 형량범위를 좌우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구체적 형량을 정할 때에
참작할 인자의 예시 중 하나에 불과함

- 「진지한 반성」은 다른 주관적 양형인자와 마찬가지로 충실한 양형심리를 거쳐 신중히 인정할 것이지, 충실한 양형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함
- 「반성 없음」을 가중인자로 반영하게 되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이 모두 이에 해당하게 되고, 결국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셈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음
- 양형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지한 반성’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결했고, 그 의결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할지 여부(의견 요지 ㉔, ㉕, ㉖ 관련)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사이에 양형상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불합리함. 더욱이 양형기준안에서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
- 양형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면서도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기로 하였고, 그 의결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㉔ 대유형 2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촬영물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서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각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할지 여부 (의견 요지 ㉓~㉔ 관련)
-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서 피해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반면, 다른 범죄는 모두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임
 - 주로 「디지털」 기기가 수단으로 쓰인다는 속성이 공통되기는 하나, 보호 법익과 처벌 대상을 달리하는 이상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이나 내용을 달리함이 마땅함
 -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둔 것은 종전 양형기준 과도 일치함
 - 촬영물, 편집물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객관적으로 법익 침해 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범죄의 결과, 즉 「결과불법」이 낮아 처벌 가치가 떨어질 경우를 지칭하기에 「피해가 경미한 경우」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양형기준안에서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정의가 모두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것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일치하고,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중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한 부분은 양형 기준안 논의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 착오로 남은 것에 불과함

- 다만,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는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음란성)가 경미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음란성’이라는 문구를 별도로 추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음란성)”은 삭제

(3) 새로운 양형인자 추가

(가) 의견 요지

[디지털 성범죄 전반]

(‘수사협조’ 추가 관련)

- ① 자수와 더불어 마약범죄처럼 「중요한 수사 협조」, 즉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삼는다면, 공범에 의한 추가 피해를 막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②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에 의한 피해 확산 방지’ 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 ③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공범의 신원, 유포 플랫폼 정보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상, ‘중요한 수사 협조’ 로 크게 수사에 기여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삼아야 함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미수 범죄도 설정 범위 추가 관련)

- ④ 살인죄에는 미수가 양형요소로 들어가 있는데 감경인자에 미수가 없어서 의문이고, 실무에서는 미수 사례도 많으므로 미수 범죄도 설정 범위에 추가할 필요 있음 (십대 여성 인권 센터)

(‘2인 이상 공동 범행’ 추가 관련)

- ⑤ 범죄단체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단독으로 범행한

경우보다는 더 가중하여야 하므로 일반가중인자로 삼아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가중인자 관련)

- ⑥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성착취물에 묘사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 「성착취물에 표현된 성적 행위 자체가 성범죄인 경우」는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며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삼아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⑦ 협박·강요·폭행에 이르지 않는 위협이나, 친분, 놀이, 편의 제공, 교제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다진 후 동영상 등을 받아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기에 이른바 「그루밍(grooming)」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여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⑧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된 경우 피고인의 책임은 가중되어야 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삼아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⑨ 피고인이 취급한 성착취물의 수량이 방대하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별개로 마약범죄에서처럼 가중요소로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로 삼아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⑩ 수사가 어려운 방법으로 피해영상물을 보관한 경우, 피해영상물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신중 수법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추가 피해가 확실시되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거나 경제적 이득을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일반가중인자에 포함되어야 함. 즉,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그 시도를 가중인자로 보아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감경인자 관련)

- ⑪ 실사 영상이 아닌 애니메이션일 경우, 실제 성착취물이 아니므로 처벌 가치가 낮아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하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으니, 실사 영상이 아닐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제시하거나, 양형기준 비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이 바람직 (수원지방법원)
- ⑫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소설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 ⑬ 구법 당시 판례에 따르면, ㉠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 11501 등 판결), 아동·청소년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SNS 등에 올릴 경우, 위 ㉠, ㉡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해당, 처벌될 여지가 있어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하거나 양형기준 이탈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대한변호사협회)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

(가중인자 관련)

- 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법무부, 한국성폭력상담소)
- ⑮ 대유형 4에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죄목에 공갈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십대 여성 인권 센터)
- ⑯ 이른바 「몸캠피싱」 등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이상, 대유형 4에서 가중인자로 반영하여야 함 (공청회 김현아 변호사 토론)
- ⑰ 대유형 4, 5에서도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대유형 1에서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두어야 함 (공청회 김현아 변호사 토론)

(감경인자 관련)

- 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유형 4에서도 「협박·강요에 이용된 촬영물, 복제물을 자발적으로 완전 폐기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삼아야 함 (공청회 김현아 변호사 토론)

(나) 논의 결과 ⇨ 일부 의견 불일치(불일치 부분은 별도 표시)

㉠ ‘수사 협조’를 감경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①, ②, ③ 관련)

- 디지털 성범죄 중 조직적 범행 양상을 떨 수 있는 대유형 1~3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함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의 예를 참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중 대유형 1~3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를 특별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 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각각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현재 특별감경인자 중 '자수'를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바꾸어 반영하고(정의 규정은 두지 않음), 일반감경인자에는 '일반적 수사 협조'를 두되 그 정의 규정은 아래와 같음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㉔ 「미수」를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④ 관련)

- 「미수」 범죄는 행위 태양과 결과가 천차만별이어서, 그동안 범죄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살인을 제외하고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미수」를 포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㉕ 「2인 이상 공동 범행」을 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⑤ 관련)

- 디지털 성범죄의 무형적 속성, 즉 물리력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2인 이상 공동 범행이 일률적으로 단독 범행보다 죄책이 더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법관의 합리적인 양형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㉖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성착취물에 묘사된 피해자

가 영유아인 경우」, 「성착취물에 표현된 성적 행위 자체가 성범죄인 경우」 등 성착취물 내용에 따른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⑥ 관련)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성착취물에 표현된 성적 행위 자체가 성범죄인 경우」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포섭 가능
- 「성착취물에 묘사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는 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연령으로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포섭 가능
- 「성착취물에 표현된 성적 행위 자체가 성범죄인 경우」는 별도 성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의 대상이 됨

㉮ 피해자를 길들여 범행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⑦ 관련)

-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는 이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포함
-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익 제공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동영상을 받고 나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특별가중인자로 삼아버리면, 자칫 모든 사안에서 특별가중인자를 언제나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음

㉯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⑧ 관련)

- 양형위원회에서는 대유형1에 한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논의한 결과 다른 양형기준에서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개념과 일치시키기로 의결하였고, 그 의결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㉔ 피고인이 취급한 성착취물의 수량이 방대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⑨ 관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포섭될 수 있음
- 이와 별도로 '성착취물의 수량이 방대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면, 동일한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위험이 발생함

㉕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그 시도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⑩ 관련)

- 우리 형법은 범인 자신의 증거은닉,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데, 해당 요소를 양형기준에서 가중사유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 피해 영상물에 대한 몰수, 폐기는 압수·수색 등 적법절차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㉖ 범행에 동원된 아동·청소년이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 등인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⑪, ⑫ 관련)

- 실사 영상이 아니어도 유명 연예인 등 실존 인물을 정교하게 묘사,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존재, 유통됨. 피해자가 실존하는 이상 실사 영상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할 필요성 있음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에 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에 성착취물의 형식은 형량을 좌우할 만한 요소로 보기 어려움
 - 양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근거 아래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그 의결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 아동·청소년 본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SNS 등에 올릴 경우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⑬ 관련)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정된 현행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이상, 아동·청소년 본인이 스스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SNS에 올릴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포로 건전한 성풍속이 저해된 이상 그 제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양형상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
- ㉡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의견 요지 ⑭ 관련) ⇨ 의견 불일치
- ㉢ 다수 의견(9인) : 현행 양형기준안 유지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다

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착안하여 일반 협박·강요보다 가중처벌한 범죄로, 같은 내용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면 이중평가가 됨

-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처벌 조항 자체에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로 범행수법을 제한한 이상, 범행수법이 다양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 범죄처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상정하기가 어려움
 - 위 두 유형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존재하므로 처벌 공백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양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근거 아래 대유형 4, 5에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그 의결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㉞ 소수 의견(2인) :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대유형 1, 2, 3에서 인정되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대유형 4, 5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 ‘범행 수단·방법을 치밀하게 계획,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 신종의 전문적 수법, 조직적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 인터넷 등 전파성 높은 수단 이용 유포 등’의 경우에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나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도 특별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엄단할 필요 있음

- ㉔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공갈 범죄도 설정 범위에 추가할지 여부(의견 요지 ⑮, ⑯ 관련)
 -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경우」는 공갈죄에 해당하여 해당 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공갈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법정형(징역 1년↑ / 3년↑)보다 상당히 낮으므로, 양형기준상 같은 범죄군으로 묶어 다루는 것은 부적절

- ㉕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도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돌지 여부(의견 요지 ⑰ 관련)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삼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나이를 불문하는 대유형 4, 5 범죄의 양형 요소로 적합하지 않음

- ㉖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서도 「협박·강요에 이용된 촬영물, 복제물을 자발적으로 완전 폐기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돌지 여부(의견 요지 ⑱ 관련)
 - ⇒ 의견 불일치

㉔ 다수 의견(9인) : 현행 양형기준안 유지

- 이미 불법 촬영물 등을 수단 삼아 협박·강요라는 범죄를 저지른 이상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갖는 의미를 대유형 1~3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 만약 불법 촬영, 유포 등 다른 디지털 성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됨

㉕ 소수 의견(2인) :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서도 「협박·강요에 이용된 촬영물, 복제물을 자발적으로 완전 폐기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

- 촬영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연인 관계에서 동의에 의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등), 이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5.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양형기준안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자는 의견

(1) 의견 요지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관련]

- ① 피해자의 접촉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사회적 유대관계 여부가 피고인의 교화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제외하여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 위원회)
- ②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데도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범죄를 저지른 때 잃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 범죄방지에 그다지 의미가 없었음이 증명된 이상, 일반공정사유에서 삭제하여야 함 (한국성폭력상담소)
- ③ 사회적 유대관계의 유무에 따라 발생된 범죄가 없어지거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거나, 추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므로 삭제하여야 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④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범죄 재발 방지에 영향을 주기 어려우므로 삭제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 ⑤ 해당 참작사유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중심의 관점에 선 것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실은 오히려 성폭력이 평범한 일상에 만연하였음을 방증하므로 삭제하여야 함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관련]

- ⑥ 신고 되어 수사 받은 것이 처음이라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참작사유로는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관련]

- ⑦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유포 전 완전 삭제’만 반영하여야 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진지한 반성’ 관련]

- ⑧ 피고인의 반성문, 주변인을 통한 탄원서는 재판부가 아닌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못을 저지르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질서이므로, 반성을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로 두기보다는 반성 없음을 부정적 참작사유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⑨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이 확인할 수 있는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집행유예 여부에 긍정적으로 참작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로 삼아야 함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관련]

- ⑩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삭제할 필요 있음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처벌불원’ 관련]

- ⑪ 그루밍을 통한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게 의존적인 경우도 많고 가해를 연인으로 생각하거나, 가해자를 동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인 가해자들은 이러한 아동의 심리를 이용하여 조종하고 통제하므로, 처벌불원이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로 포함된다면 가해자들은 아동의 심리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워지므로, 피해자가

원할 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가 되지 않아야 진정한 의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음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한 과도한 곤경을 수반’ 관련]

- ⑫ 피고인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부양가족을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재범률이 더 높을 위험이 있으며, 허위 혼인신고 등으로 부양가족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법원이 진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반공정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⑬ 과거와 달리 정부와 사회의 부양책임이 확대하는 현재는 수형자 가족에 대한 부양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복지가 해결해야 하는 이상, 양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됨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 ⑭ 피고인 가족에게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로 지원하고 가해자에게는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하고, 영리 목적 범죄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범죄를 지속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가 수감되어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됨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 ⑮ 부양가족의 곤경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쉽게 선고하는 것은 가부장 이데올로기, 남성중심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므로 지양하여야 함 (공청회 서승희 대표 토론)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가) ‘사회적 유대관계’ 관련 사정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삭제할지 여부(의견 요지 ①~⑤ 관련)

- 사회적 유대관계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주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으로서 실무상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그 존재 여부를 집행유예의 일반참작사유로 고려하고 있음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은 주변에서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해줄 만한 구체적, 객관적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하기에 집행유예 여부에 참작하는 것이 타당함

(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처벌불원’을 모두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삭제할지 여부 (의견 요지 ⑥~⑩ 관련)

- 양형인자에서의 논의와 동일함

(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한 과도한 곤경을 수반’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삭제할지 여부(의견 요지 ⑫~⑮ 관련)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한 과도한 곤경을 수반’은 집행유예 여부를 직접 좌우하는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참고하는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 불과함
- 「집행유예」 여부는 징역형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량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 설령 부양가족을 위하여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취소로써 유예 기간 중 재범을 억제함
- 우리와 비슷한 체계를 지닌 영국 양형기준에서도 「피부양 친족에 대한 유일하거나 주된 보호자(Sole or primary carer for dependent relatives)」는 공통감경인자이고, 일본에서는 피고인이 없으면 생계가 불가능하거나 간호·양육에 대한 지장이 심할 경우, 형의 집행에 의한 폐해가 있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긍정하는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함

나.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추가하자는 의견

(1) 의견 요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관련]

- ①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피해 회복 노력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 사유로 삼아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관련]

- ②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은 일반부정사유이나,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가 주요긍정사유인 것과의 균형상 주요부정사유로 삼아야 함 (한국성폭력상담소)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하되,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는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일반적 수사협조’는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추가(의견 일치)

(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을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① 관련)

-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 중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을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한 사례가 없고,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이와 다르게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음

(나)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② 관련)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은 다른 양형기준에서도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되어 있고,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이와 다르게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음

(다)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는 주요 참작사유로, ‘일반적 수사협조’는 일반 참작사유로 추가할지 여부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 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각각 반영하자는 데 전문위원단의 의견이 일치됨. 이와 균형을 맞추어 전자를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후자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각각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6. 기타

- 살인범죄, 성범죄 등 일부 범죄의 양형기준에는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중 ‘선고형의 결정방법’ 또는 [공통원칙] 중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는 무기징역의 선택에 관한 문장이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이나 [공통원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대하여 관계 기관 의견 조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별도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디지털 성범죄 중 대유형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소유형1 ‘제작 등’의 경우 그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기징역의 선택에 관한 문장을 추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하여 무기징역의 선택에 관한 문장을 추가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데 전문위원단의 의견이

일치됨

- 무기징역의 선택에 관한 문장은 형법 제42조 단서에서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이 25년일 때(2010년 형법 개정 전) 마련된 것으로서 유기징역의 상한이 50년으로 크게 늘어난 이상 ‘25년’ rule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됨. 그런데 이는 양형기준의 총칙에 관한 변경 문제이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를 진행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소유형 1 제작 등 범죄에서만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음. 대유형의 개수가 5개, 소유형의 개수가 15개에 이르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굳이 무기징역의 선택에 관한 문장을 추가할 실익이 크지 않음
- 무기징역의 선택에 관한 문장이 포함된 양형기준은 살인범죄, 강도범죄, 성범죄, 뇌물범죄 등으로서 그 권고 형량범위에 ‘무기’가 포함되어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에는 ‘무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존재함

Ⅲ.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심의 내용

- 2020. 10. 23. 제10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주거침입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는 아래와 같음

가. 설정 범위

(1) 일반적 기준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 침입
-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 형법 제321조 (신체·주거·건조물·자동차·선박·항공기·방실) 수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319①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3년 ↓ or 500만 ↓
형법 §319②	퇴거불응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	3년 ↓ or 500만 ↓
형법 §321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	3년 ↓
폭력행위처벌법 §2②1호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퇴거불응)]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의 죄를 범함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1/2 가중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 침입·퇴거불응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주거침입·퇴거불응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누범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320	특수(제319조 각 죄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주거침입, 퇴거불응)를 범함	5년 ↓
폭력행위처벌법 §2③1호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주거침입, 퇴거불응)]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7년 ↓
폭력행위처벌법 §3④1호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특수(주거침입, 퇴거불응)]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호의 죄(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1년-12년

나. 유형 분류

01 ¹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2	퇴거불응			
3	주거신체수색			

▷ 공동주거침입은 1유형에, 공동퇴거불응은 2유형에 각 포섭

02¹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2	누범주거침입 등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2. 권고 형량범위 설정의 고려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함

3. 권고 형량범위 검토

가. 일반적 기준

(1) 참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가) 협박 (형법 §283① // 3년 ↓ or 500만 ↓ or 구류, 과료)

○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나) 재물손괴 (형법 §366 // 3년 ↓ or 700만 ↓)

○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6월	4월-10월	8월-1년6월

(다) 유기 (형법 §271① // 3년 ↓ or 500만 ↓)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학대	-8월	2월-1년	6월-1년6월

(2) 형량 분포¹⁾

(가) 주거침입(합계 395건), 퇴거불응(합계 33건)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1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건조물침입	수	-	1	1	26	3	16	7	2	4	-	-	1	-	-	61
	비율	-	1.6	1.6	42.6	4.9	26.3	11.5	3.3	6.6	-	-	1.6	-	-	100.0
방실침입	수	-	-	-	7	-	8	1	-	-	-	-	-	1	-	17
	비율	-	-	-	41.2	-	47.1	5.9	-	-	-	-	-	5.9	-	100.0
주거침입	수	-	1	6	83	6	121	44	16	17	-	1	1	5	1	302
	비율	-	0.3	2.0	27.5	2.0	40.1	14.6	5.3	5.6	-	0.3	0.3	1.7	0.3	100.0
퇴거불응	수	-	-	1	16	1	6	-	-	1	-	-	-	-	-	25
	비율	-	-	4.0	64.0	4.0	24.0	-	-	4.0	-	-	-	-	-	100.0
폭력행위처벌법위반 (공동주거침입)	수	-	-	-	10	-	2	3	-	-	-	-	-	-	-	15
	비율	-	-	-	58.8	-	23.5	17.7	-	-	-	-	-	-	-	100.0
폭력행위처벌법위반 (공동퇴거불응)	수	-	-	-	5	-	3	-	-	-	-	-	-	-	-	8
	비율	-	-	-	62.5	-	37.5	-	-	-	-	-	-	-	-	100.0

1)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7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 II(2020. 9. 14.)를 근거로 하되, 실제 해당 판결문을 찾아 통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제시함. 이하 주거침입 범죄 형량 분포에 대한 통계는 모두 같음.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1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전체	수	0	2	8	147	10	156	55	18	22	0	1	2	6	1	428
	비율	0.0	0.5	1.9	34.3	2.3	36.5	12.9	4.2	5.1	0.0	0.2	0.5	1.4	0.2	100.0

- 전체 평균 형량 6.23월(주거침입 6.35월, 퇴거불응 4.79월)
 - 기본범죄(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 불포함) 평균 형량 6.30월(주거침입 6.40월, 퇴거불응 4.80월)
 - 공동주거침입 5.07월, 공동퇴거불응 4.75월

(나) 주거신체수색(합계 11건)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1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건조물수색	수	-	-	2	2	-	-	-	-	-	-	-	-	-	-	4
	비율	-	-	50.0	50.0	-	-	-	-	-	-	-	-	-	-	100.0
방실수색	수	-	1	-	-	-	-	-	-	-	-	-	-	-	-	1
	비율	-	100.0	-	-	-	-	-	-	-	-	-	-	-	-	100.0
자동차수색	수	-	2	-	2	-	1	-	-	-	-	-	-	-	-	5
	비율	-	40.0	-	40.0	-	20.0	-	-	-	-	-	-	-	-	100.0
신체수색	수	-	-	-	1	-	-	-	-	-	-	-	-	-	-	1
	비율	-	-	-	100.0	-	-	-	-	-	-	-	-	-	-	100.0
전체	수	0	3	2	5	0	1	0	0	0	0	0	0	0	0	11
	비율	0.0	27.3	18.2	45.4	0.0	9.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평균 형량 3.45월

(3) 권고 형량범위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8월	6월-1년	10월-2년
2	퇴거불응	-6월	4월-10월	8월-1년6월
3	주거신체수색	-4월	2월-8월	6월-1년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주거신체수색' 순으로 형량분포(2월-2

년, 3월-1년, 2월-6월), 평균형량(6.35월, 4.79월, 3.45월)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위 순서대로 형량범위에 차등을 두어 설정하도록 함

- 각 평균형량이 기본 영역의 하한과 상한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기본 영역 하한을 6월, 4월, 2월로 각각 설정하고, 형량 분포,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6월-1년', '4월-10월', '2월-8월'로 각각 설정
- 주거침입 유형의 가중 영역 상한은 통계자료상 최고형량인 2년으로 설정하고, 퇴거불응 유형 및 주거신체수색 유형은 통계자료상 최고형량(퇴거불응: 1년, 주거신체수색: 6월)을 고려하되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1년 6월, 1년으로 각각 설정. 가중 영역 하한은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10월, 8월, 6월로 각각 설정 ⇒ 결국 가중 영역은 '10월-2년', '8월-1년6월', '6월-1년'
- 감경 영역은 형량분포범위,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8월 이하', '6월 이하', '4월 이하'로 각각 설정

나.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1) 참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가) 특수주거침입 등(5년 ↓)

① 특수폭행 (형법 §261 // 5 ↓ or 1,000만 ↓)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폭행 · 특수존속폭행	2월-1년2월	4월-1년10월	6월-2년4월

② 체포·감금 (형법 §276① // 5↓ or 700만↓)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8월	6월-1년	8월-2년

- 특수범은 특별가중인자로 적용

③ 강요 (형법 §324① // 5↓ or 3,000만↓)

○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요	-8월	6월-1년	10월-2년

- 특수범은 특별가중인자로 적용

④ 특수손괴 (형법 §369① // 5↓ or 1,000만↓)

○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특수손괴 등	-8월	6월-1년2월	8월-2년

(나) 누범주거침입 등(7년↓)

① 누범폭행 (폭력행위처벌법 §2③1호 // 7년↓)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누범·특수폭행	2월-1년2월	4월-1년10월	6월-2년4월

② 누범협박 (폭력행위처벌법 §2③1호 // 7년↓) & 특수협박 (형법 §284 // 7년↓ or 1,000만↓)

○ 협박 범죄 - 0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누범·특수협박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③ 누범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 §2③1호 // 7년 ↓)

○ 손괴 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특수손괴 등	-8월	6월-1년2월	8월-2년

④ 상해 (형법 §257① // 7년 ↓ or 10년 ↓ 자 or 1,000만 ↓)

○ 폭력 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0월	4월-1년6월	6월-2년6월

⑤ 유기·학대치상 (형법 §275①전문 // 7년 ↓)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2월-1년6월	6월-2년	1년-3년

(다) 누범특수주거침입 등(1년-12년)

① 누범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3④1호 // 1년-12년)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누범·특수폭행	2월-1년2월	4월-1년10월	6월-2년4월

② 누범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 §3④1호 // 1년-12년)

○ 협박범죄 - 0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누범·특수협박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③ 누범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 §3④1호 // 1년-12년)

○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누범특수손괴	6월-1년6월	10월-2년6월	1년6월-4년

(2) 형량 분포

(가) 특수주거침입(합계 56건)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1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특수건조물침입	수	-	-	1	2	-	8	3	-	-	-	-	-	-	-	14
	비율	-	-	7.1	14.3	-	57.2	21.4	-	-	-	-	-	-	-	100.0
특수주거침입	수	-	-	-	8	-	13	7	2	2	-	-	-	1	-	33
	비율	-	-	-	24.2	-	39.4	21.2	6.1	6.1	-	-	-	3.0	-	100.0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집단·흉기등주거침입)	수	-	-	-	-	-	4	-	2	3	-	-	-	-	-	9
	비율	-	-	-	-	-	44.5	-	22.2	33.3	-	-	-	-	-	100.0
전체	수	0	0	1	10	0	25	10	4	5	0	0	0	1	0	56
	비율	0.0	0.0	1.8	17.9	0.0	44.6	17.9	7.1	8.9	0.0	0.0	0.0	1.8	0.0	100.0

○ 평균 형량(전체) : 6.98월

- 2016. 1. 6.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 1항의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사건(1년 ↑)의 경우 형법상 특수주거침입(5년 ↓)과 법정형이 다르기는 하나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죄와 행위태양이 유사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분석함
- 특수퇴거불응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음

(나) 누범주거침입(합계 3건)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1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상습주거침입)	수	-	-	-	-	-	-	-	1	-	1	-	-	-	1	3
	비율	-	-	-	-	-	-	-	33.3	-	33.3	-	-	-	33.3	100.0
전체	수	0	0	0	0	0	0	0	1	0	1	0	0	0	1	3
	비율	0.0	0.0	0.0	0.0	0.0	0.0	0.0	33.3	0.0	33.3	0.0	0.0	33.3	0.0	100.0

○ 평균 형량 : 1년4월

- 누범퇴거불응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음

(다) 누범특수주거침입 - 사례 없음

(3) 권고 형량범위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10월	6월-1년2월	1년-2년6월
2	누범주거침입 등	4월-1년	8월-1년4월	1년2월-3년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3년6월

(가) 특수주거침입 등, 누범주거침입 등

○ 평균형량(특수주거침입: 6.98월, 누범주거침입: 1년4월)이 기본 영역의 하한과 상한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기본 영역 하한을 6월, 8월로 각각 설정하고, 형량분포,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 '01. 일반적 기준'과의 체계 정합성 등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6월-1년 2월', '8월-1년 4월'로 각각 설정

○ 특수주거침입, 누범주거침입 유형의 통계자료 상 최고형량은 1년6월과 2년이나, '01. 일반적 기준'의 주거침입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이 2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 조정을 함

⇒ 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가중 영역 상한을 2년 6월, 누범주거침입 유형의 가중 영역 상한을 3년으로 각각 설정하되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을 '1년-2년 6월', '1년 2월-3년'으로 각각 설정

- 감경 영역은 형량분포범위,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10월 이하', '4월-1년'으로 각각 설정

(나)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선고사례 없으나, 법정형, 유사 범죄 양형기준, 체계 정합성 등 고려하여 감경 영역을 '6월-1년6월', 기본 영역을 '10월-2년', 가중 영역을 '1년 6월-3년 6월'로 각각 설정

(4) 결론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8월	6월-1년	10월-2년
2	퇴거불응	-6월	4월-10월	8월-1년6월
3	주거신체수색	-4월	2월-8월	6월-1년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10월	6월-1년2월	1년-2년6월
2	누범주거침입 등	4월-1년	8월-1년4월	1년2월-3년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3년6월

IV.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범 포함 여부, 대유형 배치 순서 및 소유형 명칭 변경

1. 과실범 포함 여부

가. 논의 대상

- 2020. 10. 23. 제10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된 환경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중 과실범은 아래와 같음

■ 물환경보전법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78조 2호	1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	2

■ 해양환경관리법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127조 2호	3년↓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2
128조 1호	2년↓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1

■ 가축분뇨법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50조	3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2
	6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제15조(2)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9
	9호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2

2)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나. 상정할 수 있는 견해

(1) 포함 견해

- 환경범죄는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에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 목적이나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실범도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대법원 2008도7438 판결³⁾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고의범만을 설정 대상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사실상 과실범까지 설정 범위에 포함하게 됨

(2) 불포함 견해

- 과실범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는 과실치사상, 교통범죄에서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범죄들에 국한되어 있고, 환경범죄에서의 과실범과 같이 인명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과실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전례가 없음
- 과실범은 대체로 법정형 및 실형률이 낮으므로 형량구간을 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3)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이나 제반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현행 제43조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즉, 위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현행 제92조 제5호)의 규정은 고의범은 물론이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누기 어렵고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도 크지 않음

- 고의범과 과실범을 동일한 대유형으로 분류하여 같은 양형인 자표를 사용하게 되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다. 전문위원단 논의 결과 ⇨ 과실범 포함에 의견 일치

- 환경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명·신체의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환경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보호를 통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점에서 환경범죄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못지 않게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환경범죄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막대할 수 있으므로, 직접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없음
- 환경범죄는 전체적으로 법정형이 높지 않고(7년 이하 ~ 1년 이하) 실행률도 낮은 편이므로(16.9%), 법정형과 실행률이 낮다는 점이 환경범죄 중 과실범만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논거가 되기 어려움
 - 논의 대상 과실범 중 해양환경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 또는 2년 이하로서 고의범인 환경범죄와 비교하여 특별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형이 3년 이하 또는 2년 이하인 다수의 범죄들에 관하여도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나머지 과실범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이나, 고의범인 환경범죄 중에도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가 적지 않고, 법정형이 1년 이하인 도주죄 등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전례가 존재

- 방화죄, 손괴죄 등 다른 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실범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환경범죄는 일상적 사회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함에 따라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음
- 객관적 구성요건이 동일한 고의범과 과실범이라고 할지라도 법정형이 다르고, 법정형에 따라 소유형을 분류하여 형량범위에 차이를 두는 이상, 고의·과실 여부는 양형인자에 반영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양형인자는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하여도 무방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 영국의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환경범죄’, ‘부주의한 교통사고 범죄’ 등 일응 과실범으로 보이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미국 역시 과실범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2. 대유형 배치·소유형 명칭 변경

가. 대유형 배치 변경 ⇨ 변경에 전문위원단 의견 일치

- 2020. 10. 23. 제10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된 환경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 배치 순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자는 최승원 전문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단 전원이 찬성함

대유형	제105차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	변경(안)
1	대기환경 범죄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2	물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3	해양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4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해양환경 범죄
5	가축분뇨 범죄	대기환경 범죄

-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주는 실무상 신고사례가 가장 많고 평균 형량도 높아 상대적으로 중대 범죄라고 볼 수 있음 ⇒ 제1유형에 배치
- 넓은 의미의 물환경 범죄인 가축분뇨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를 함께 배치하되 신고사례, 평균 형량 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를 제2, 3, 4유형으로 배치
- 마지막으로 대기환경 범죄를 제5유형으로 배치

나. 소유형 명칭 변경 ⇨ **변경에 전문위원단 의견 일치**

- 2020. 10. 23. 제10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된 환경범죄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를 토대로 각각의 소유형 명칭에 해당 범죄를 모두 나열할 경우 명칭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승원 전문위원이 다른 양형기준 사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형 명칭 변경 의견을 제출하였고, 전문위원단 전원이 찬성함
- 수정·추가 부분은 삭선을 사용하거나 밑줄 표시함 ⇨ 일단 대 유형 순서는 종전 양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01¹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			

-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는 1 유형에,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는 2유형에 각 포섭

02¹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배출행위 등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분뇨 등 무단배출			

-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78조 제3호 위반죄(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는 4유형에 각 포섭

03¹ 해양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 의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2	선박·해양시설에서 의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04¹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4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 건설폐기물법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는 2유형에, 같은 법 제63조 제1호 위반죄(처리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는 3유형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위반죄(미신고 폐기물처리 등)는 4유형에 각 포섭

05¹ 가축분뇨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무단배출 등			
2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무단배출 등			
3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50조 제4호 위반죄(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3유형에 각 포섭

다. 변경 후 유형 분류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대유형 순서와 소유형 명칭을 전문위원단의 일치된 의견과 같이 변경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01¹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3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4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 건설폐기물법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는 2유형에, 같은 법 제63조 제1호 위반죄(처리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는 3유형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위반죄(미신고 폐기물처리 등)는 4유형에 각 포섭

02¹ 가축분뇨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2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3	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50조 제4호 위반죄(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3유형에 각 포섭

03¹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78조 제3호 위반죄(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는 4유형에 각 포섭

04¹ 해양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의 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2	선박·해양시설에서의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05¹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는 1유형에,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는 2유형에 각 포섭

V.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심의 내용

- 2020. 10. 23. 제10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환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는 아래와 같음

가. 대기환경 범죄

(1) 설정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89조	1호	제23조 제1항이나 제2항4)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3
	2호	제26조 제1항 본문이나 제2항5)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2
	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제31조 제1항></p> <p>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질을 배출하는 행위</p> </div>	7
90조	1호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40
	2호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제31조 제1항></p> <p>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1

4)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

(2) 유형 분류

01¹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			

- 제1유형(법정형 7년 이하)

<89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89조 2호> 오염방지시설 미설치

<89조 3호>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 제2유형(법정형 5년 이하)

<90조 1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90조 2호> 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

나. 물환경 범죄

(1) 설정 범위(물환경보전법)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 건수
75조	1호 7년↓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6)에 따른 배출시설(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등)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13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76조	2호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3	
	3호	<p>사업자(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방지시설(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38조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5	
77조	1호	3년↓	제15조 제1항 ⁷⁾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	3
78조	2호	1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	2
	3호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경우	6

-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7)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수를 버리는 행위

(2) 유형 분류

02¹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배출행위 등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분뇨 등 무단배출			

- 제1유형(법정형 7년 이하)
 - <75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제2유형(법정형 5년 이하)
 - <76조 2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76조 3호>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
- 제3유형(법정형 3년 이하)
 - <77조 1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제4유형(법정형 1년 이하)
 - <78조 2호>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78조 3호> 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

다. 해양환경 범죄

(1) 설정 범위(해양환경관리법)

적용법 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 수
126 조	1호 5년↓	22조 제1항 및 제2항 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1
127 조	1호 3년↓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9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2

적용법 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 수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128 조	1호 2년↓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1

(2) 유형 분류

03¹ 해양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2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제1유형(법정형 5년 이하)
 - <126조 1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제2유형(법정형 3년 이하)
 - <127조 1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
 - <127조 2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제3유형(법정형 2년 이하)
 - <128조 1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

라.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1) 설정 범위(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8)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가) 폐기물관리법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63조	1호	7년↓	제8조 ⁹⁾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경우	66
	2호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40
64조	5호 ¹⁰⁾	5년↓	제25조 제3항 ¹¹⁾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60
65조	1호	3년↓	제13조 ¹²⁾ 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15
66조	1호	2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¹³⁾ 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제65조 제1호의 경우는 제외)	12
	2호		제46조 제1항 ¹⁴⁾ 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9

9)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가 현행 법률 제64조 제5호로 되었으며 위 선고건수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해당 범죄가 포함되었다.

11) 제25조(폐기물처리업)

-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12)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3)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나) 건설폐기물법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62조	1호 5년↓	제21조 제3항 ¹⁵⁾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1
63조	1호 3년↓	제13조 제1항 ¹⁶⁾ 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2

(2) 유형 분류

04¹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3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4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 제1유형(법정형 7년 이하)

<폐기물관리법 63조 1호>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같은 법 63조 2호> 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소각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4)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15)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16)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2유형(법정형 5년 이하)
 - <폐기물관리법 64조 5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법 62조 1호> 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
- 제3유형(법정형 3년 이하)
 - <폐기물관리법 65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 <건설폐기물법 63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 제4유형(법정형 2년 이하)
 - <폐기물관리법 66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 <같은 법 66조 2호> 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마. 가축분뇨 범죄

(1) 설정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48조 1호	5년↓	<p>제11조¹⁷⁾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¹⁸⁾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조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 	3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건수
		<p>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p> <p>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p> <p>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p>	
	6호	제28조 제1항 ¹⁹ 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49조	1호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6
	2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5
	4호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50조	3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2
	4호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7
	5호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
	6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제15조 ²⁰ 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9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9호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2
11호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2

(2) 유형 분류

05¹ 가축분뇨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2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17)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18)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20)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입·중간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3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제1유형(법정형 5년 이하)
 - <48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48조 6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제2유형(법정형 2년 이하)
 - <49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
 - <49조 2호>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49조 4호>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제3유형(법정형 1년 이하)
 - <50조 3호>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 <50조 4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
 - <50조 5호> 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50조 6호>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50조 9호>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 <50조 11호> 재활용신고자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2. 권고 형량범위 설정의 고려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함
- 다만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된 환경범죄의 경우 선고 건수가 충분하지 않은 범죄가 상당 수 존재하여 경험적 접근방식에 의한 형량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선고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난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먼저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나머지 환경범죄 중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형량범위에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함

3. 참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가. 법정형이 7년 이하인 범죄의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변호사법위반범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1,000만 원 미만	- 4월	2월 - 8월	6월 - 1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4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6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1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4년 - 7년

나. 법정형이 5년 이하인 범죄의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증권.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 정보 위.변조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석유사업법위반 범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대규모 (50만 리터 이상)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없음	비조직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조직적 범행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도박장소.공간 개설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4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사경마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불법게임물 등 유통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채권추심법위반	폭행, 협박 등 행위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대부업법위반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인 범죄의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8월	6월 - 1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2년6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없음	일반적 범행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월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2년6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채권추심법위반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4월 - 10월	6월 - 2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원 미만	-10월	6월 - 1년	10월 - 1년2월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2월	1년 - 2년
		50억 원 이상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사행성.게임물범죄	무허가.무등록 영업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사경륜.경정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라. 법정형이 2년 이하인 범죄의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석유사업법위반 범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정량미달판매.부피증가 판매	- 8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사행성.게임물범죄	무허가.무등록 영업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가.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1) 형량 분포²¹⁾

단위: 명, %, 월

법률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4	15	18	24	36		
폐기물 관리법 / 건설폐 기물법	63조	수	1	1	9	2	31	16	7	15	2	-	1	3	1	89	8.64
		비율	1.1	1.1	10.1	2.2	34.8	18.0	7.9	16.9	2.2	-	1.1	3.4	1.1	100.0	
	64조/ 건설6 2	수	-	-	6	-	27	11	4	9	1	1	2	2	-	63	8.49
		비율	-	-	9.5	-	42.9	17.5	6.3	14.3	1.6	1.6	3.2	3.2	-	100.0	
	65조/ 건설6 3	수	-	-	1	-	3	4	4	2	1	-	2	-	-	17	9.88
		비율	-	-	5.9	-	17.6	23.5	23.5	11.8	5.9	-	11.8	-	-	100.0	
	66조	수	-	-	6	-	10	2	-	1	-	-	-	-	-	19	5.89
		비율	-	-	31.6	-	52.6	10.5	-	5.3	-	-	-	-	-	100.0	
전체	수	1	1	22	2	71	33	15	27	4	1	5	5	1	188	8.43	
	비율	0.5	0.5	11.7	1.1	37.8	17.6	8.0	14.4	2.1	0.5	2.7	2.7	0.5	100.0		

(2)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유형	구분(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7↓)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2월 - 3년
2	무허가 폐기물처리(5↓)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3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무허가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위탁 등(3↓)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4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미신고 폐기물처리 등(2↓)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1)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7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 II(2020. 9. 14.)를 근거로 하되, 제10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결정된 설정 범위 결과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건만으로 추리고, 판결문을 직접 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한 결과임. 이하 환경범죄 형량 분포에 대한 통계는 모두 같음

(가) 제1유형(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 법정형 : 7↓

- 평균형량 8.64월이므로 기본영역 하한을 8월로 설정하고, 형량 분포,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기본 영역을 '8월-1년6월'로 설정
- 가중 영역 상한은 통계자료 상 최고형량인 3년으로 설정하고,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 형량범위를 '1년2월-3년'으로 설정
- 감경 영역은 형량분포범위,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4월-10월'로 설정

(나) 제2유형(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법정형 : 5↓

- 평균형량이 8.49월인 점, 형량 분포 등 고려하여 기본 영역을 '8월-1년2월'로 설정함
- 통계자료 상 최고형량은 2년이나, 체계 정합성,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2년6월'로 설정하고,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 형량범위를 '1년-2년6월'로 설정
- 감경 영역은 형량분포범위,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10월 이하'로 설정

(다) 제3유형(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 법정형 : 3↓

- 평균형량이 9.88월인 점 및 형량 분포 등 고려하여 기본 영역을 '6월-1년'으로 설정함(양형자료조사 결과에 따른 평균형량은 제1유형, 제2유형보다 더 높으나 법정형과 죄질, 양형

기준의 체계 정합성 등 감안하여 형량범위를 위 두 유형보다 낮게 설정함)

- 통계자료상 최고형량은 1년6월이나, 체계 정합성,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 형량범위를 '10월-2년'으로 설정
- 감경 영역은 형량분포범위,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8월 이하'로 설정

(라) 제4유형(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미신고 폐기물 처리 등) - 법정형 : 2↓

- 평균형량이 5.89월인 점 및 형량 분포 등 고려하여 기본 영역을 '4월-10월'로 설정함
- 통계자료상 최고형량은 1년이나, 체계 정합성,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1년6월'로 설정하고,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 형량범위를 '8월-1년6월'로 설정
- 감경 영역은 형량분포범위,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6월 이하'로 설정

나. 가축분뇨 범죄

(1)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법률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6	8	10	12	18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48조	수	-	-	3	1	-	-	1	1	6	8.00
		비율	-	-	50.0	16.7	-	-	16.7	16.7	100.0	

단위: 명, %, 월

법률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6	8	10	12	18		
관한 법률	49조	수	-	-	8	19	5	4	4	-	40	6.85
		비율	-	-	20.0	47.5	12.5	10.0	10.0	-	100.0	
	50조	수	1	1	13	14	1	4	3	-	37	6.08
		비율	2.7	2.7	32.4	37.8	2.7	10.8	8.1	-	100.0	
전체	수	1	1	24	34	6	8	8	1	83	6.59	
	비율	2.4	1.2	28.9	41.0	7.2	9.6	9.6	1.2	100.0		

(2) 권고 형량범위 논의 결과 ⇨ 일부 의견 불일치

[요약]

유형	구분(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5↓)	- 10월	8월 - 1년2월(7인) 6월 - 1년2월(4인)	1년 - 2년6월(7인) 10월 - 2년(4인)
2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2↓)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1↓)	- 4월	2월 - 8월	6월 - 10월(9인) 6월 - 1년(2인)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법정형 : 5↓ ⇨ 의견 불일치

○ 다수 의견(7인) : 감경 영역 10월 이하 / 기본 영역 8월-1년2월 / 가중 영역 1년-2년6월

-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대유형 1)의 소유형 2와 법정형이

동일한데(징역 5년 이하), 이와 다르게 형량범위를 설정하기에 충분한 통계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양형자료조사 결과 6건에 불과함), 특별히 죄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대유형 1 소유형 2와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 소수 의견(4인) : 감경 영역 10월 이하 / 기본영역 6월-1년2월 / 가중영역 10월-2년

- 환경범죄군 내에서도 각 대유형별로 형량분포, 죄질 등을 따져서 권고 형량범위를 달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법정형이 '5년 이하'로 동일한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제2유형과 비교할 때 평균형량이 다소 낮고(8월<8.49월) 형량분포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므로 기본 영역을 '6월-1년2월'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통계자료 상 최고형량은 1년6월이나,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 형량범위를 '10월-2년'으로 설정
- 감경 영역은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소유형2 등 유사범죄 양형기준 고려하여 '10월 이하'로 설정

(나) 제2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법정형 : 2↓ ⇨ **의견 일치**

- 법정형이 '2년 이하'로 동일하고 평균형량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제4유형과 마찬가지로 형량범위를 설정함
- 통계자료 상 최고형량은 1년이나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폐

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제4유형과 마찬가지로 가중 영역 상한을 '1년6월'로 정하고,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 형량범위를 '8월-1년6월'로 설정

(다) 제3유형(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법정형 : 1↓ ⇨ **의견 불일치**

○ 평균 형량(6.08월), 형량 분포 등을 고려하고, 법정형이 '1년 이하'인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감경 영역을 '4월 이하'로, 기본 영역을 '2월-8월'로, 가중 영역 하한을 6월로 각각 설정함

○ 가중 영역 상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뉨

① 다수 의견(9인) : 10월

- 법정형 상한이 1년인데,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으로 인하여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하게 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음. 상한을 1년으로 정하게 되면 특별조정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음

② 소수 의견(2인) : 1년

- 법정형 상한이 1년인 다른 범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에서도 징역 1년을 가중영역 상한으로 정한 경우가 존재하고, 법정형 상한이 1년인 범죄에서 특별조정의 여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낮음

다. 물환경 범죄

(1)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법률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4	6	8	10	12	18		
물환경 보전법	75조	수	3	8	1	-	-	-	12	5.67
		비율	25.0	66.7	8.3	-	-	-	100.0	
	76조	수	6	6	4	2	6	2	26	8.46
		비율	23.1	23.1	15.4	7.7	23.1	7.7	100.0	
	77조	수	-	2	-	-	1	-	3	8.00
		비율	-	66.7	-	-	33.3	-	100.0	
	78조	수	2	2	-	2	1	-	7	7.43
		비율	28.6	28.6	-	28.6	14.3	-	100.0	
전체	수	11	18	5	4	8	2	48	7.58	
	비율	22.9	37.5	10.4	8.3	16.7	4.2	100.0		

(2) 권고 형량범위 논의 결과 ⇨ 일부 의견 불일치

[요약]

유형	구분(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7↓)	- 10월(6인) 4월 - 10월(5인)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6인) 1년2월 - 3년(5인)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배출행위/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위반 등(5↓)	-8월(6인) -10월(5인)	6월 - 1년2월(6인) 8월 - 1년2월(5인)	10월 - 2년(6인) 1년 - 2년6월(5인)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3↓)	- 6월(6인) - 8월(5인)	4월-1년(6인) 6월-1년(5인)	8월-1년6월(6인) 10월-2년(5인)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분뇨 등 무단배출(1↓)	- 4월	2월 - 8월	6월 - 10월(9인) 6월 - 1년(2인)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법정형 : 7↓ ⇨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6인) : 감경 영역 10월 이하 / 기본 영역 8월-1년6월 / 가중 영역 1년-2년6월

- 법정형이 '7년 이하'로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인 대유형1형과 동일하나 평균형량이 5.67월로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제1유형(8.64월)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 전체적인 형량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권고 형량범위를 대유형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함이 타당
- 다만 선고사례가 12건에 불과하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환경 범죄의 제2 내지 4유형은 평균형량이 7.43월~8.46월로 오히려 더 높아 양형기준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때 규범적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기본 영역을 '8월-1년6월'로 정함
- 가중 영역과 관련하여, 통계자료상 최고형량은 8월에 불과하나, 기본 영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2년6월'로 정하고,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 형량범위를 '1년-2년6월'로 설정
- 감경 영역 역시 기본 영역, 가중 영역과 비슷한 정도로 규범적 조정을 하여 '10월 이하'로 설정

○ 제2 의견(5인) : 감경 영역 4월-10월 / 기본 영역 8월-1년6월 / 가중 영역 1년2월-3년

-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대유형 1)의 소유형 1과 법정형이 동일한데(징역 7년 이하), 이와 다르게 형량범위를 설정하기에 충분한 통계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양형자료조사 결과 12건에 불과), 특별히 죄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

려움. 따라서 대유형 1 소유형 1과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나)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배출행위 등) - 법정형 : 5↓ ⇨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6인) : 감경 영역 8월 이하 / 기본 영역 6월-1년2월 / 가중 영역 10월-2년

- 법정형이 '5년 이하'로 동일한 가축분뇨 범죄 제1유형과 비교할 때 평균형량이 다소 높기는 하나(8.46월>8월) 두 범죄 모두 '넓은 의미'의 물환경 범죄에 해당하는 점, 형량 분포도 '4월 ~ 1년 6월'로 동일한 점 등 고려하여 기본 영역을 '6월-1년2월'로 동일하게 설정
- 통계자료 상 최고형량은 1년 6월이나,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가축분뇨 범죄 제1유형과 마찬가지로 가중 영역 상한을 '2년'으로 설정하되, 가중 영역 하한은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10월'로 설정함
- 감경 영역 역시 가축분뇨 범죄 제1유형의 형량 범위를 참조하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8월 이하'로 설정

○ 제2 의견(5인) : 감경 영역 10월 이하 / 기본 영역 8월-1년2월 / 가중 영역 1년-2년6월

-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대유형 1)의 소유형 2와 법정형이 동일할 뿐 아니라(징역 5년 이하), 평균형량도 각각 8.49월과 8.46월로서 유사하고, 특별히 죄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대유형 1 소유형 2와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다) 제3유형(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법정형 : 3↓

⇒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6인) : 감경 영역 6월 이하 / 기본 영역 4월-1년 /
가중 영역 8월-1년6월

- 평균형량(8월), 형량 분포 등을 고려하되, 선고사례가 3건으로 매우 적으므로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제3유형 등 법정형 3년 이하인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도 참조하여 기본 영역을 '4월-1년'으로 설정함
- 가중 영역, 감경 영역 역시 형량 분포와 법정형 동일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가중 영역은 '8월-1년6월', 감경 영역은 '6월 이하'로 각각 설정

○ 제2 의견(5인) : 감경 영역 8월 이하 / 기본 영역 6월-1년 /
가중 영역 10월-2년

-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대유형 1)의 소유형 3과 법정형이 동일한데(징역 3년 이하), 이와 다르게 형량범위를 설정하기에 충분한 통계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양형자료조사 결과가 3건에 불과), 특별히 죄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대유형 1 소유형 3과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라) 제4유형(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
물질 무단배출/분뇨 등 무단배출) - 법정형 : 1↓

○ 대유형2(가축분뇨 범죄)의 소유형 3에서의 논의 결과와 같음

라. 해양환경 범죄

(1)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법률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4	6	8	10	12	14		
해양환경관리법	126조	수	-	1	-	-	-	-	1	6.00
		비율	-	100.0	-	-	-	-	-	
	127조	수	2	4	1	1	2	1	11	8.00
		비율	18.2	36.4	9.1	9.1	18.2	9.1	100.0	
	128조	수	-	1	-	-	-	-	1	6.00
		비율	-	100.0	-	-	-	-	-	
전체	수	2	6	1	1	2	1	13	7.69	
	비율	15.4	46.2	7.7	7.7	15.4	7.7	100.0		

(2) 권고 형량범위 논의 결과 ⇨ 의견 불일치

[요약]

유형	구분(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5↓)	-8월(6인) -10월(5인)	6월 - 1년2월(6인) 8월 - 1년2월(5인)	10월 - 2년(6인) 1년 - 2년6월(5인)
2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3↓)	- 6월(6인) - 8월(5인)	4월-1년(6인) 6월-1년(5인)	8월-1년6월(6인) 10월-2년(5인)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2↓)	- 4월(6인) - 6월(5인)	2월-8월(6인) 4월-10월(5인)	6월-1년(6인) 8월-1년6월(5인)

(가) 제1유형(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법정형 : 5↓ ⇨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6인) : 감경 영역 8월 이하 / 기본 영역 6월-1년2월 / 가중 영역 10월-2년

- 선고사례가 1건에 불과하므로, '넓은 의미'의 물환경 범죄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5년 이하'로 동일한 물환경 범죄 제2유형과 마찬가지로 감경 영역을 '8월 이하', 기본 영역을 '6월-1년2월', 가중 영역을 '10월-2년'으로 각각 설정

○ 제2 의견(5인) : 감경 영역 10월 이하 / 기본 영역 8월-1년2월 / 가중 영역 1년-2년6월

-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대유형 1)의 소유형 2와 법정형이 동일한데(징역 5년 이하), 이와 다르게 형량범위를 설정하기에 충분한 통계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양형자료조사 결과가 1건에 불과), 특별히 죄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대유형 1 소유형 2와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나) 제2유형(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 법정형 : 3↓ ⇨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6인) : 감경 영역 6월 이하 / 기본 영역 4월-1년 / 가중 영역 8월-1년6월

- 선고사례가 11건으로 부족하므로, '넓은 의미'의 물환경 범죄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3년 이하'로 동일하며 평균형량도 8월로 같은 물환경 범죄 제3유형과 마찬가지로 감경 영역을 '6월 이하', 기본 영역을 '4월-1년', 가중 영역을 '8월-1년6월'로 각각 설정

○ 제2 의견(5인) : 감경영역 8월 이하 / 기본영역 6월-1년 / 가중영역 10월-2년

-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대유형 1)의 소유형 3과 법정형이 동일한데(징역 3년 이하), 이와 다르게 형량범위를 설정하기

에 충분한 통계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양형자료조사 결과가 11건에 불과), 특별히 죄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대유형 1 소유형 3과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다) 제3유형(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법정형 : 2↓ ⇨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6인) : 감경 영역 4월 이하 / 기본 영역 2월-8월 / 가중 영역 6월-1년

- 선고사례가 1건에 불과하므로, '넓은 의미'의 물환경 범죄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2년 이하'로 동일한 가축분뇨 범죄 제2 유형의 형량범위를 참조하되, 과실범인 점,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 영역을 '4월 이하', 기본 영역을 '2월-8월', 가중 영역을 '6월-1년'으로 각각 설정

○ 제2 의견(5인) : 감경 영역 6월 이하 / 기본 영역 4월-10월 / 가중 영역 8월-1년6월

-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대유형 1)의 소유형 4와 법정형이 동일한데(징역 2년 이하), 이와 다르게 형량범위를 설정하기에 충분한 통계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양형자료조사 결과가 1건에 불과), 특별히 죄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대유형 1 소유형 4와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마. 대기환경 범죄

(1)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법률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4	5	6	8	10	12		
대기환경 보전법	89조	수	1	-	6	2	-	-	9	6.22
		비율	11.1	-	66.7	22.2	-	-	100.0	
	90조	수	11	1	24	2	1	1	40	5.78
		비율	27.5	2.5	60.0	5.0	2.5	2.5	100.0	
전체	수	12	1	30	4	1	1	49	5.86	
	비율	24.5	2.0	61.2	8.2	2.0	2.0	100.0		

(2) 권고 형량범위 논의 결과 ⇨ 일부 의견 불일치

유형	구분(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 설 미설치·미가동 등(7↓)	- 10월(6인) 4월 - 10월(5인)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6인) 1년2월 - 3년(5인)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 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5↓)	-8월(6인) -10월(5인)	6월 - 1년2월(6인) 8월 - 1년2월(5인)	10월 - 2년(6인) 1년 - 2년6월(5인)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 - 법정형 : 7↓ ⇨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6인) : 감경 영역 10월 이하 / 기본 영역 8월-1년6월 / 가중 영역 1년-2년6월

- 평균형량이 6.22월에 불과하고 형량의 분포 범위 역시 '4월 ~ 8월'로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선고사례가 9건으로 부족하며 법정형이 '7년 이하'로 환경범죄 중 가장 높은 점등 고려할 때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통계보다는 다소 높게 형량범위를 설정할 필요 있음
- 환경범죄 중 법정형이 '7년 이하'로 동일한 폐기물·건설폐

기물 범죄 제1유형의 형량범위와 물환경 범죄 제1유형의 형량범위를 주로 참조하되, 위와 같은 형량통계를 반영하여 형량범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물환경 범죄 제1유형과 동일하게 감경영역을 '10월 이하', 기본영역을 '8월-1년6월', 가중영역을 '1년-2년6월'로 각각 설정

○ 제2 의견(5인) : 감경영역 4월-10월 / 기본영역 8월-1년6월 / 가중영역 1년2월-3년

-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대유형 1)의 소유형 1과 법정형이 동일한데(징역 7년 이하), 이와 다르게 형량범위를 설정하기에 충분한 통계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양형자료조사 결과가 9건에 불과), 특별히 죄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대유형 1 소유형 1과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나)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 - 법정형 : 5↓ ⇨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6인) : 감경 영역 8월 이하 / 기본 영역 6월-1년2월 / 가중 영역 10월-2년

- 평균형량이 5.78월에 불과하고 형량의 분포 범위 역시 '4월 ~ 1년'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법정형이 '5년 이하'로 환경범죄 중 비교적 높은 점 등 고려할 때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통계보다는 다소 높게 형량범위를 설정할 필요 있음
- 환경범죄 중 법정형이 '5년 이하'로 동일한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제2유형, 가축분뇨 범죄 제1유형, 물환경 범죄

제2유형, 해양환경 범죄 제1유형의 형량범위를 주로 참조하
 되, 위와 같은 형량통계를 반영하여 감경 영역을 '8월 이
 하', 기본 영역을 '6월-1년2월', 가중 영역을 '10월-2년'으로
 각각 설정함

○ 제2 의견(5인) : 감경 영역 10월 이하 / 기본 영역 8월-1년2
 월 / 가중 영역 1년-2년6월

-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대유형 1)의 소유형 2와 법정형이
 동일함(징역 5년 이하). 양형자료조사 결과 평균형량이 다른
 환경범죄와 비교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제1 의견에서
 도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물환경범죄 제2유형
 과 거의 유사한 형량범위를 제시할 정도로 통계 수치에 지
 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대기환경 범죄의 죄질
 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따라서 대유형 1 소유형 2와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정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5. 결론

가.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2월 - 3년
2	무허가 폐기물처리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3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무허가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위탁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4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나. 가축분뇨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10월	8월 - 1년2월(7인) 6월 - 1년2월(4인)	1년 - 2년6월(7인) 10월 - 2년(4인)
2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4월	2월 - 8월	6월 - 10월(9인) 6월 - 1년(2인)

다.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10월(6인) 4월 - 10월(5인)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6인) 1년2월 - 3년(5인)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배출행위/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위반 등	-8월(6인) -10월(5인)	6월 - 1년2월(6인) 8월 - 1년2월(5인)	10월 - 2년(6인) 1년 - 2년6월(5인)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6월(6인) - 8월(5인)	4월-1년(6인) 6월-1년(5인)	8월-1년6월(6인) 10월-2년(5인)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분뇨 등 무단배출	- 4월	2월 - 8월	6월 - 10월(9인) 6월 - 1년(2인)

라. 해양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8월(6인) -10월(5인)	6월 - 1년2월(6인) 8월 - 1년2월(5인)	10월 - 2년(6인) 1년 - 2년6월(5인)
2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 6월(6인) - 8월(5인)	4월-1년(6인) 6월-1년(5인)	8월-1년6월(6인) 10월-2년(5인)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4월(6인) - 6월(5인)	2월-8월(6인) 4월-10월(5인)	6월-1년(6인) 8월-1년6월(5인)

마.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 설 미설치·미가동 등	- 10월(6인) 4월 - 10월(5인)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6인) 1년2월 - 3년(5인)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 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	-8월(6인) -10월(5인)	6월 - 1년2월(6인) 8월 - 1년2월(5인)	10월 - 2년(6인) 1년 - 2년6월(5인)

Ⅵ. 과실치사상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의 양형 기준 수정안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1. 개관

가. 현행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

○ 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 징역형 또는 금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2020. 7. 13. 제103차 정기회의

(1) 고용노동부 장관 의견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높은 범죄 발생빈도와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에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함께 분류하고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7년↓, 1억 원↓)만 규정 → 독립 범죄군 편성 및 설정 범위 확대가 필요함
- 현행 양형기준은 기업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개인범죄인 업무상과실치사를 유사하게 취급 → 형량 범위 상향 필요
- 효율적 제재를 위하여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도 필요함

(2) 현황 분석

- 평균 선고 형량
 - 양형기준 설정 전 8개월(제23조 제1항) / 7.63개월(제23조 제2항) / 7.19개월(제23조 제3항) → 2017년 6.56개월, 2018년 7개월, 2019년 6.98개월
 - 양형기준 설정 후에 오히려 선고형이 하락하는 추세
 - 양형기준 적용 사건 중 실행 선고비율은 1.6%에 불과
-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감경 5개 > 가중 2개로 불균형
 - 가중 2개 중 1개는 동종 누범으로 매우 낮은 실행률에 비추어 실효성 떨어짐
 - 특별감경인자 적용 93% >> 특별가중인자 적용 6.9%

(3) 양형위원회 결정 사항

- 독립 범죄군 편성 및 설정 범위 확대 검토

-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 재검토
- 다만 벌금형 양형기준은 중장기적 검토 과제이므로 제외

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 최근 개정 경과

-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 2020. 1. 16. 시행
- 2020. 6. 9. 법률 제17433호로 최종 개정, 2020. 10. 1. 시행
-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 제정법률안」 이 제안된 상태

(2) 주요 내용

(가)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 도입 (7년↓, 1억원↓)
 - 구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6조의2(사업주만 처벌) → 현행법 제167조(사업주, 도급인 처벌)
 - 종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제68조 제3호; 1년↓, 1천만 원↓)으로만 기소, 처벌 가능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법정형 상향 (1년↓ / 1천만 원↓ ⇒ 3년↓ / 3천만 원↓)
 - 구법 제68조 제3호 → 현행법 제169조 제1호

(나) 현행법상 처벌 규정

- 제167조 (7년↓ / 1억 원↓)
 -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
- 제168조 (5년↓ / 5천만 원↓)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주요업무위반
- 제169조 (3년↓ / 3천만 원↓)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등
- 제170조 (1년↓ / 1천만 원↓)
 - 그 밖에 경미한 의무위반

(3) 주요 조항 비교

구법	현행법
<p>제23조(안전조치)</p> <p>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p>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안전조치)</p> <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p>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p>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보건조치)</p>	<p>제39조(보건조치)</p>

구법	현행법
<p>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작업중지 등)</p> <p>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p>	<p>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p> <p>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해당 조항 없음]</p>	<p>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p>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p> <p>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p>	<p>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p> <p>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구법	현행법
<p>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p> <p>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p>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p> <p>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p>
<p>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p> <p>①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p>	<p>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p> <p>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p>

구법	현행법
<p>된다.</p> <p>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p>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p> <p>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p> <p>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p> <p>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p>
<p>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p>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p> <p>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p>제37조(제조 등의 금지)</p> <p>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p>	<p>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p> <p>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p>

구법	현행법
<p>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p> <p>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p>	<p>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p> <p>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p>
<p>제38조(제조 등의 허가)</p> <p>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p> <p>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p> <p>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p>	<p>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p> <p>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p>
<p>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p> <p>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p>	<p>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p> <p>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제52조의6(비밀 유지)</p> <p>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2조(비밀 유지)</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p>제63조(비밀 유지)</p> <p>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에 따라</p>	

구법	현행법
<p>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1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제48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p>[해당 조항 없음]</p>	<p>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p>
<p>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67조(벌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p>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p>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구법	현행법
위반한 자	<p>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p>
<p>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3.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p>	<p>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p>
	<p>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p>

라. 참고 사항

- 구법이 전부 개정, 시행된 시점이 2020. 1. 16.로서 현행법에 따른 양형 사례가 부족하고,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자료 또한 2015-2019년 구법에 따른 양형 통계를 정리한 것임
- 구법상 통계를 근거로 하되, 적용 법조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검토함

2. 구성요건과 양형자료조사 결과

가. 현행법 제167조 위반 (구법 제66조의2 위반)

(1)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설비, 물질, 에너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기구, 설비), 제2호(물질), 제3호(에너지)	7년↓, 1억 원↓
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장소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제2호(붕괴), 제3호(물체 낙하, 비산), 제4호(천재지변)	
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원재료 등), 제2호(방사선 등), 제3호(기체 등), 제4호(계측감시 등), 제5호(단순반복작업 등), 제6호(환기 등)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	
현장실습생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3항, 제39조 제1항, 제63조 본문, 제166조의2	
위 각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위 각 범죄 재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10.5년↓, 1.5억 원↓

- 음영이 있는 부분은 종전 양형자료가 있으나, 음영이 없는 부분은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이하 같음)

(2) 양형자료조사 결과²²⁾

(가) 사건 분포

구법	현행법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12	9	8	14	20	63
		19.0%	14.3%	12.7%	22.2%	31.7%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5	2	5	19	18	49
		10.2%	4.1%	10.2%	38.8%	36.7%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0	10	20	24	36	100
		10.0%	10.0%	20.0%	24.0%	36.0%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0	0	1	0	4	5
		0.0%	0.0%	20.0%	0.0%	80.0%	100%
전체		27	21	34	57	78	217
		12.4%	9.7%	15.7%	26.3%	35.9%	100%

(나) 선고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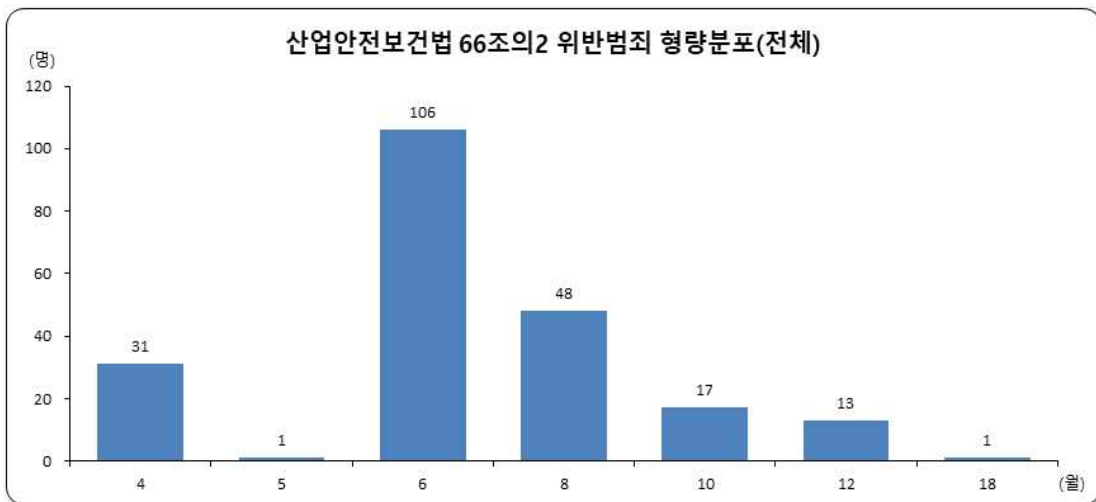
구법	현행법	실형	집행유예	전체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0	63	63
		0.0%	100%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1	48	49
		2.0%	98.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3	97	100
		3.0%	97.0%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0	5	5
		0.0%	100%	100%
전체		4	213	217
		1.8%	98.2%	100%

22)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 대상. 이하 같음

(다) 형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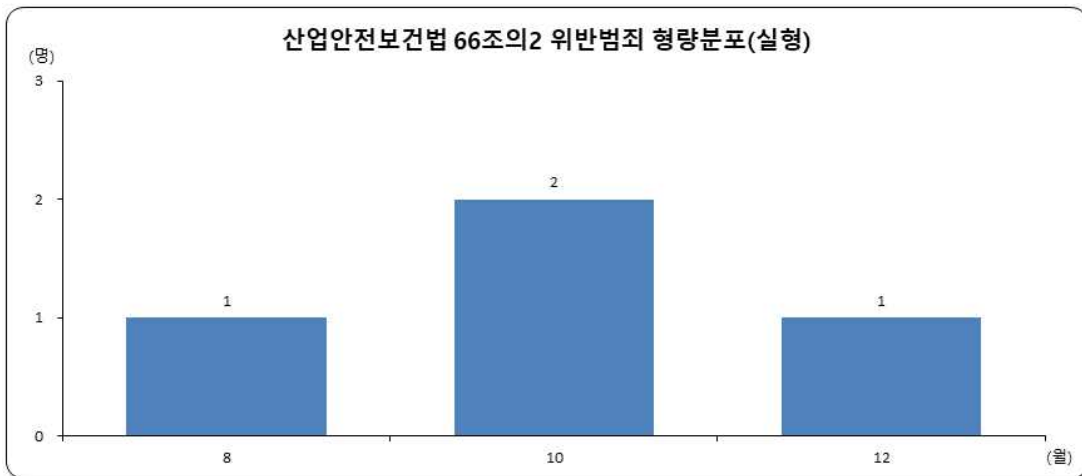
○ 전체

구법	현행법	형량(개월)							전체	평균 (개월)
		4	5	6	8	10	12	18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8	0	33	12	4	5	1	63	7.05
		12.7%	0.0%	52.4%	19.0%	6.3%	7.9%	1.6%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9	0	20	13	5	2	0	49	6.82
		18.4%	0.0%	40.8%	26.5%	10.2%	4.1%	0.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4	0	50	23	7	6	0	100	6.82
		14.0%	0.0%	50.0%	23.0%	7.0%	6.0%	0.0%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0	1	3	0	1	0	0	5	6.60
		0.0%	20.0%	60.0%	0.0%	20.0%	0.0%	0.0%	100%	
전체		31	1	106	48	17	13	1	217	6.88
		14.3%	0.5%	48.8%	22.1%	7.8%	6.0%	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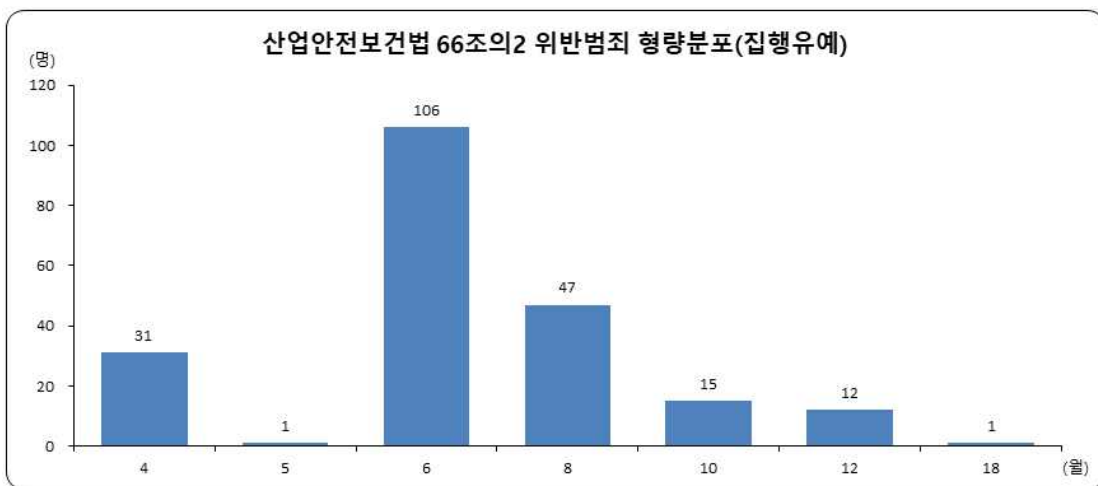
○ 실형

구법	현행법	형량(개월)			전체	평균 (개월)
		8	10	12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0	1	0	1	10.00
		0.0%	100%	0.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	1	1	3	10.00
		33.3%	33.3%	33.3%	100%	
전체		1	2	1	4	10.00
		25.0%	50.0%	25.0%	100%	



○ 집행유예

구법	현행법	형량(개월)							전체	평균(개월)
		4	5	6	8	10	12	18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8	0	33	12	4	5	1	63	7.05
		12.7%	0.0%	52.4%	19.0%	6.3%	7.9%	1.6%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9	0	20	13	4	2	0	48	6.75
		18.8%	0.0%	41.7%	27.1%	8.3%	4.2%	0.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4	0	50	22	6	5	0	97	6.72
		14.4%	0.0%	51.5%	22.7%	6.2%	5.2%	0.0%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0	1	3	0	1	0	0	5	6.60
		0.0%	20.0%	60.0%	0.0%	20.0%	0.0%	0.0%	100%	
전체		31	1	106	47	15	12	1	213	6.82
		14.6%	0.5%	49.8%	22.1%	7.0%	5.6%	0.5%	100%	



나. 현행법 제168조 제1호 위반 (구법 제67조 제1호 위반)

(1)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설비, 물질, 에너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기구, 설비), 제2호(물질), 제3호(에너지)	5년 ↓, 5천만 원 ↓
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장소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제2호(붕괴), 제3호(물체 낙하, 비산), 제4호(천재지변)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원재료 등), 제2호(방사선 등), 제3호(기체 등), 제4호(계측감시 등), 제5호(단순반복작업 등), 제6호(환기 등)	
대피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51조	
중대 재해 대응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유해·위험 물질 제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17조 제1항	
유해·위험 물질의 무허가 제조,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18조 제1항	
석면 해체, 제거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22조 제1항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57조 제3항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3항, 제39조 제1항, 제51조, 제54조 제1항, 제157조 제3항, 제166조의2	

(2) 양형자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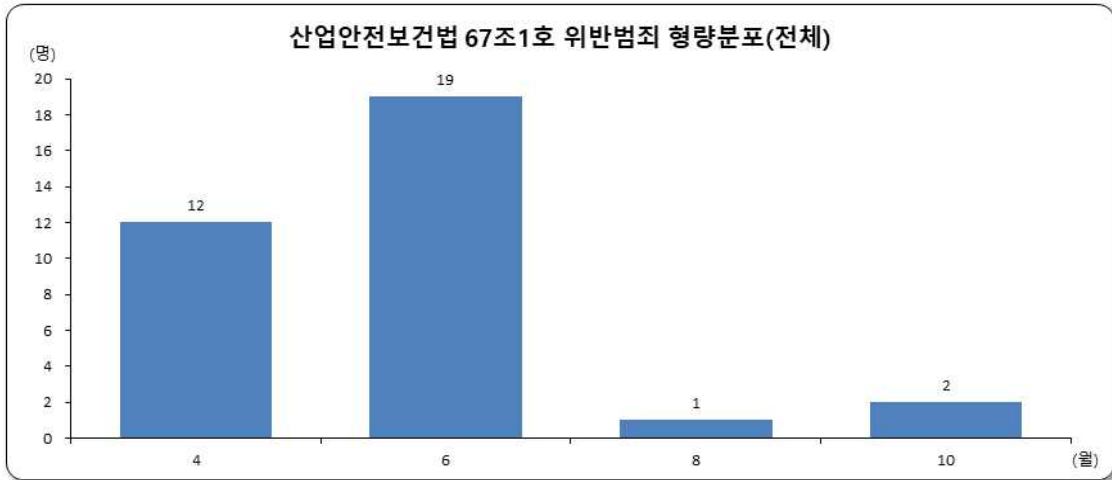
(가) 사건 분포

구법	현행법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7	4	3	3	3	20
		35.0%	20.0%	15.0%	15.0%	15.0%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	2	-	-	-	2
		-	100%	-	-	-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7	1	3	-	-	11
		63.6%	9.1%	27.3%	-	-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1	-	-	-	-	1
		100%	-	-	-	-	100%
전체		15	7	6	3	3	34
		44.1%	20.6%	17.6%	8.8%	8.8%	100%

(나) 형량 분포

구법	현행법	형량(개월)				전체	평균(개월)
		4	8	10	12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9	10	-	1	20	5.30
		45.0%	50.0%	-	5.0%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1	-	1	-	2	6.00
		50.0%	-	50.0%	-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2	8	-	1	11	6.00
		18.2%	72.7%	-	9.1%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	1	-	-	1	6.00
		-	100%	-	-	100%	
전체		12	19	1	2	34	5.59
		35.3%	55.9%	2.9%	5.9%	100%	

○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 없음



다. 현행법 제169조 제1호, 제170조 제4호 위반(구법 제68조 제3호 위반)

(1)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1년↓, 1천만 원↓ 3년↓, 3천만 원↓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166조의2	
유해·위험 기계 등의 방호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0조 제1, 2항	1년↓, 1천만 원↓
안전인증 무단 표시·광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5조 제2항	
안전인증 임의 변경·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5조 제3항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미신고 제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비밀유지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162조	

(2) 양형자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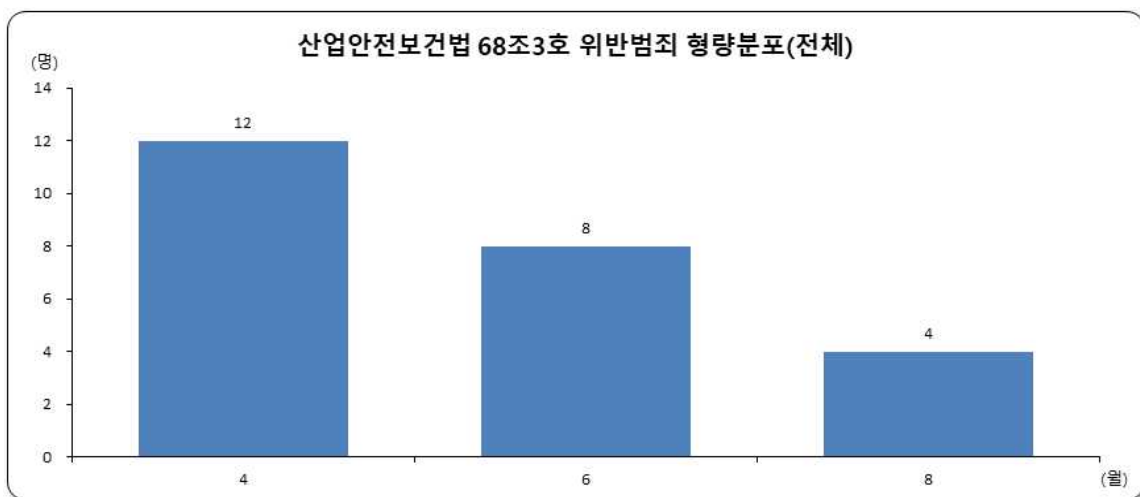
(가) 사건 분포

구법	현행법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제29조 제3항	제63조	6	5	6	2	5	24
		25.0%	20.8%	25.0%	8.3%	20.8%	100%
전체		6	5	6	2	5	24
		25.0%	20.8%	25.0%	8.3%	20.8%	100%

(나) 형량 분포

구법	현행법	형량(개월)			전체	평균(개월)
		4	6	8		
제29조 제3항	제63조	12	8	4	24	5.33
		50.0%	33.3%	16.7%	100%	
전체		12	8	4	24	5.33
		50.0%	33.3%	16.7%	100%	

○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 없음



라. 현행법 제173조 제1호, 제170조 제4호 위반(구법 제68조 제3호 위반)

(1)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 + 상당한 주의감독 해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법인인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10억 원 ↓
		개인인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상당한 주의감독 해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부터 제172조	해당 조문의 벌금형

(2) 양형자료조사 결과

- 벌금형에 대하여서는 양형자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결과 ⇨ **일부 의견 불일치**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현행법 제167조 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에 더하여, 신설된 ① 도급인의 형사책임, ② 사망자가 근로자 아닌 현장실습생일 경우, ③ 5년 내 재범 시 가중 처벌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도 모두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새로 도입된 도급인의 형사책임,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일 경우에 관한 양형사례는 없으나, 구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와 구성요건·법정형이 같으므로,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공유할 수 있음. 5년 내 재범 범죄는 종전 법정형 1.5배 가중 유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형기준에 반영 가능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1) 요약

- ① 현행법 제168조 제1호 위반(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현행법 제169조 제1호 위반(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일부 포함(다수 의견, 8인)
 - 모두 제외(소수 의견, 3인)
- ② 현행법 제173조 제1호 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시 양벌규정으로 법인 등 처벌)
 - 제외(다수 의견, 9인)
 - 법인 처벌 부분 포함(소수 의견, 2인)

(2) 현행법 제168조 제1호 위반(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현행법 제169조 제1호 위반(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가) 일부를 포함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8인)

-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반드시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행위 태양이 비슷하고 법정형 상한만 그 3/5 수준으로 낮음을 고려하면, 사업주에 대한 권고 형량을 기초로 약간 감경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형량범위 설정 가능
- 다만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에는 워낙 다양한 행위 태양이

있어 그 전부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양형자료조사 결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 설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래 표 중 음영이 있는 부분이고, 음영이 없는 부분은 설정 범위에서 제외

[현행법 제168조 제1호 위반(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설비, 물질, 에너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기구, 설비), 제2호(물질), 제3호(에너지)
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장소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제2호(붕괴), 제3호(물체 낙하, 비산), 제4호(천재지변)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원재료 등), 제2호(방사선 등), 제3호(기체 등), 제4호(계측감시 등), 제5호(단순반복작업 등), 제6호(환기 등)
대피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51조
중대 재해 대응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유해·위험 물질 제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17조 제1항
유해·위험 물질의 무허가 제조,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18조 제1항
석면 해체, 제거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22조 제1항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57조 제3항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3항, 제39조 제1항, 제51조, 제54조 제1항, 제157조 제3항, 제166조의2

[현행법 제169조 제1호 위반(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166조의2
유해·위험 기계 등의 방호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0조 제1, 2항
안전인증 무단 표시·광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5조 제2항
안전인증 임의 변경·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5조 제3항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미신고 제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비밀유지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162조

(나) 제외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3인)

-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8가지(기계 등 설비, 폭발성 등 물질, 전기 등 에너지, 굴착 등 작업, 추락·붕괴·낙하·천재지변 위험 장소),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6가지(가스 등·사업장 배출 기체, 방사선 등, 계측감시 등 작업, 단순 반복 작업, 환기 등 적정기준 유지) 등 조치의무 위반의 유형이 매우 다양함
- 양형자료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5년간 발생건수는 34건, 24건으로 대부분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있고, 실행·집행유예 비율이 낮음

(3) 현행법 제173조 제1호 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시 양벌규정으로 법인 등 처벌)

(가) 제외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9인)

-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선고 형량이 선거권·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 외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음. 현재까지의 양형기준은 징역형에 대한 것으로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양형위원회는 2020. 7. 13. 제103차 회의에서 과실치사상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하면서도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두었고, 그 결정을 변경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 현행법 제173조 제1호 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시 양벌규정으로 법인 등 처벌)에 대해서는 양형자료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추출 시 참고할 만한 통계자료가 없음
-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내에서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여럿인데, 그 처벌 대상이 누구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것인지, 매출 규모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둘 것인지 등도 검토되어야 함

(나) 법인 처벌 부분을 포함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2인)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 행정형벌의 양벌규정과 달리

기업형 범죄의 범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양벌규정을 이원화하면서 벌금액을 대폭 상향함. 입법 의사를 존중하여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고, 범인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방지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행위자 개인의 책임 정도와 범인의 주의감독 해태 정도를 종합하여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설정이 가능할 것임
-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 종전 법률과 변경된 점이 없고, 벌금액의 상한도 1억 원이므로 설정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4.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가.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나. 독립 범죄군으로 설정할지 여부 ⇨ 의견 일치

-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군의 명칭에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포함하고,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와 구별되는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함에 의견 일치. 즉, 독립 범죄군으로 설정하지 않음에 의견 일치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중 상당수가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동반하기에 종전 과실치사상 범죄와 유사성이 있고, 양형인자의 정의 또한 상당수 공유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 범죄와 과실치사상 범죄는 실질적 연관성이 높으므로 굳이 별도의 범죄군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높지 않음. 만약 독립 범죄군으로 설정한다면, 과실치사상 범죄군과 산업안전보건 범죄군 모두 대유형이 1개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고려할 필요 있음

다. 범죄군 명칭과 대유형 순서 ⇨ **의견 불일치**

(1) 범죄군 명칭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로 하고, 대유형 1을 과실치사상 범죄, 대유형 2를 산업안전보건 범죄로 하자는 견해(제1 의견, 6인)

- 과실치사상 범죄가 일반법인 형법에 의한 범죄이므로, 특별법에 의한 범죄인 산업안전보건 범죄보다 명칭과 대유형에서 앞서는 것이 타당
- 과실치사상 범죄가 실제로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것이므로, 범죄군 명칭에서 앞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범죄군 명칭은 ‘산업안전보건·과실치사상 범죄’로 하고, 대유형 1을 산업안전보건 범죄, 대유형 2를 과실치사상 범죄로 하자는 견해(제2 의견, 5인)

- 산업안전보건 범죄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는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범죄군 명칭과 대유형에서 앞세우는 것이 타당
-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설정 대상에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을

추가할 경우에는 과실치사상 범죄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일
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됨

라. 소유형 분류 방안 ⇨ 의견 불일치

(1) 법정형/구성요건에 따라 분류하는 견해(다수 의견, 8인)

- 법정형과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징역형의 법정형 : 3년 ↓), ② 사업주의 안전·보
건조치의무위반(징역형의 법정형 : 5년 ↓), ③ 안전·보건조
치의무위반치사(징역형의 법정형 : 7년 ↓)로 분류
- 5년 이내의 재범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를 살려 권고 형
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둠
- 다수 의견에 따른 유형 분류안

산업안전보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 현장실습생 관련 범죄는 행위 태양에 따라 제1, 2, 3유형에 포함
- ▷ 제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제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²³⁾

23) 법정형의 1.5배를 가중하는 특정강력범죄(누범) 등과 같은 방식임[양형위원회, 2020 양형기준, 29면 등

(2) 설정 범위에 대한 소수 의견을 토대로 5년 이내 재범에 대하여 서술식 기준이 아닌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제1 소수 의견, 2인)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은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와 그에 따른 법인 양벌규정을 별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 다만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누범의 적용요건과 다르므로(앞의 전과가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무관하고 형 집행 종료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 등에서 누범과 다름)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
- 제1 소수 의견에 따른 유형 분류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2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5년 내 재범)			
3	양벌규정(법인)			

(3) 제1 소수 의견에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자는 견해(제2 소수 의견, 1인)

-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제1 소수 의견의 유형 분류 방안에서 '양벌규정(법인)'을 삭제하여야 함

- 제2 소수 의견에 따른 유형 분류안

산업안전보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2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5년 내 재범)			

VII. 향후 일정

- 일시 : 2020. 12. 21.(월) 15:30 ~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주거침입범죄」/환경범죄」양형기준안 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과실치사상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